

의정활동보고서

제197회 임시회(2005. 3. 15 ~ 3. 25)

경 상 북 도 의 회

개 회 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의근 도지사님과 도승회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제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1일간의 일정으로 제197회 임시회가 열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제 절기상으로는 우수 정칩이 지나고 활력이 넘치는 새 봄을 맞아 읍년에 계획한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야할 때라고 봅니다.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들도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사업 초기단계부터 여론수렴 등 사전영향 평가를 통하여 문제점은 없는지 세밀히 살펴봐야 할 것 입니다.

그리고 2월말 현재 전국의 수출액이 2백 5억불 달성되는 등 수출호조에 힘입어 경기가 다소 회복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등 노사가 화합 단결하여 국가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 엔진이 마련 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이번 회기는 금년 들어 처음으로 도정질문을 실시하게 됩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서는 도정의 주요현안 과제에 대하여 도민의
궁금증을 해소 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시고,
정책대안도 많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성실한 답변과 함께 당면한 산불예방과 해빙기
도민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를 통하여 의정활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李 哲 雨

차 례

I . 개 황	
II . 의사일정	
1. 소 집	
2. 회 기	
3. 활 동	
가. 본회의	
나. 상임위원회	
III . 의안 처리	
1. 본회의	
2. 상임위원회	
IV . 민원 처리	
1. 청 원	
2. 진 정	
가. 접 수	
나. 처 리	

V. 본회의 보고사항	
1. 의안 접수사항	
2. 조례 공포사항	
3. 위원회 활동사항	
VI. 기타사항	
VII. 도정질문	
VIII. 5분 자유발언 및 신상발언	

부 록

□ 조례안	
1. 경상북도과학기술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경상북도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3. 경상북도지역정보화추진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경상북도립공원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	
6. 경상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 조례안	

7.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 조례안
8. 경상북도 울릉군민 여객선운임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9.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사무국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안

□ 동 의 안

1. 2005년도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운용변경 계획안
.....
2. 대한민국 경상북도와 일본국 시마네현간 자매결연
철회의 건

□ 건 의 안

1. 신한일어업협정 재협상 촉구 건의문

I. 개 황

경상북도의회 제197회 임시회는 2005년 3월 15일부터 본회의를 개최하여 3월 25일까지 16일간의 회기동안 3차의 본회의와 연 6회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임시회 본회의 의사운영 내용을 개관해 보면,

3월 15일(화) 오전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도정질문 (방대선·장미향의원)을 청취한 후, 제197회 경상북도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위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

3월 16일(수)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도정질문 (우성호·이호근·김병진의원)을 청취한 후, 3월 10일 의회운영위에서 심사한 「대한민국 경상북도의회 국제친선의원연맹과 일본국 시마네현 한일친선 의원연맹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파기의 건」을 의결 하고 휴회하였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3월 15일부터 동월 24일까지 15일간 조례안· 기금운용변경 계획안 등 심사와 부산, 경남 외 도내 시·군 사업장을 현지확인하였다.

3월 25일(금) 오전 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5분 자유발언 (김정기, 권중연의원)과 신상발언(김성하의원)을 청취한 후 경상북도 과학기술진흥조례일부개정 조례안 등 13건을 의결한 후 제197회 경상 북도의회 임시회를 폐회하였다.

Ⅱ. 의사일정

1. 소집

가. 집회구분 : 임시회

나. 소집근거 : 지방자치법 제39조

다. 집회 공고일 : 2005. 2. 28(월)

라. 집회일시 : 2005. 3. 15(화) 11:00

2. 회 기

가. 회의기간 : 2005. 3. 15 ~ 3. 25 (16일간)

나. 개의회수

○ 본회의 : 3회 (누계 73회)

○ 상임위 회의 : 7회

3. 활 동

가. 본회의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2005. 3.15(화) 11:00 (제1차)	1. 도정질문 ○ 방대선 의원(성주군, 행정사회위원회) ○ 장미향 의원(상주시, 교육환경위원회)	

개회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2005. 3.15(화) 11:00 (제1차)	2. 제19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휴회의 건	
2005. 3.16(수) 11:00 (제2차)	1. 도정질문 ○ 우성호 의원(영주시, 경제문화위원회) ○ 이호근 의원(영양군, 건설소방위원회) ○ 김병진 의원(문경시, 기획과학위원회) 2. 대한민국 경상북도의회 국제친선 의원연맹 과 일본국 시마네현 일한친선 의원연맹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파기의 건	원안가결
2005. 3.25(금) 11:00 (제3차)	1. 5분 자유발언 ○ 김정기 의원(김천시, 경제문화위원회) ○ 권종연 의원(안동시, 기획과학위원회) 2. 신상발언 ○ 김성하의원(경산시, 교육환경위원회) 3. 경상북도과학기술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경상북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 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경상북도지역정보화추진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북도립공원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8. 경상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조례안 10. 2005년도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운용변경 계획안 11. 경상북도울릉군민여객선운임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2. 동북 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사무국 설치 및 운영지원조례안	원안가결 " " " 수정가결 원안가결 " " "

개회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2005. 3.25(금) 11:00 (제3차)	13. 대한민국 경상북도와 일본국 시마네현간 자매결연 철회의 건 14. 경상북도의회 의원(김성하) 사직의 건 15. 신한일 어업협정 재협상 촉구 건의문	원안가결 "

나. 상임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개회의일시	심 사 안 건 (내 용)	비 고
2005. 3.10(화) 11:00(제1차)	○ 시마네현의회와의 자매결연 협의의 건	원안가결

〈기획과학위원회〉

개회의일시	심 사 안 건 (내 용)	비 고
2005. 3.15(화) 15:00(제1차)	○ 경상북도과학기술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경상북도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경상북도지역정보화추진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 "
2005. 3.17(금) ~ 3.19(토)	○ 현지확인(부산, 경남) - 타 시도 공영개발 사업장 방문	

〈행정사회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내 용)	비 고
2005. 3.15(화) 14:00(제1차)	○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교육환경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내 용)	비 고
2005. 3.15(화) 14:00(제1차)	○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2005. 3.21(월) ~ 3.23(수)	○ 현지 확인 - 재선충 피해지역(구미시 지산동) - 「세계 물의 날」 기념행사 참석(안동) - 경상북도교육연구원, 경상북도립안동도서관, 산림자원종합개발사업소	
2005. 3.25(금) 10:00(제2차)	○ 신한일어업협정 재협상 촉구 건의문	원안가결

〈농정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내 용)	비 고
2005. 3.16(수) 16:00(제1차)	○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개정조례안 ○ 2005년도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원안가결 "

〈경제문화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내 용)	비 고
2005. 3.23(수) 10:00(제1차)	○ 경상북도 울릉군민 여객선 운임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동북 아시아지역 자치단체연합사무국 설치및운영지원 조례안 ○ 대한민국 경상북도와 일본국 시마네현 간 자매결연 철회의 건	원안가결 " "
2005. 3.22(화) ~ 3.24(목)	○ 현지확인 - 문화유적지 비교시찰(해인사, 조식선생 유적지, 전주 한옥마을)	

〈건설소방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내 용)	비 고
2005. 3.21(월) ~ 3.23(수)	○ 현지확인 - 영천소방서 - 주요사업추진 현장 - 임고~중장간 도로 확·포장공사(영천) - 가창~각남간 도로 확·포장공사(청도) - 벽진~초전간 도로 확·포장공사(성주)	

Ⅲ. 의안처리

1. 본회의

구 분		부 의	심의 · 의결				철 회	계 류	비 고
			계	가 결		부 결			
				원 안	수 정				
계		14 (291)	14 (287)	12 (253)	2 (33)	(1)	(1)	(3)	
조 례 안	소 계	9 (141)	9 (138)	7 (120)	2 (17)	(1)		(3)	
	의 회 제 안	2 (15)	2 (14)	(5)	2 (8)	(1)		(1)	
	도지사 제 출	6 (104)	6 (102)	6 (95)	(7)			(2)	
	교육감 제 출	1 (22)	1 (22)	1 (20)	(2)				
예산 · 결산		(25)	(25)	(12)	(13)				
동의 · 승인		2 (76)	2 (76)	2 (75)	(1)				
건 의 안		1 (11)	1 (11)	1 (10)	(1)				
결 의 안		(11)	(11)	(11)					
기 타 안		2 (27)	2 (26)	2 (25)	(1)		(1)		

※ ()내는 제7대 의회 누계

▶ 의안 내용은 붙임 부록에 게재

2. 상임위원회

위원회	회부	심 사 · 의 결								철 회	계 류
		가 결							부 결		
		계	조례	예산 결산	동의 승인	건의	결의	기타			
계	14 (294)	14 (289)	9 (139)	(25)	2 (76)	1 (11)	(11)	2 (27)	(1)	(1)	(3)
의 회 운 영	1 (10)	1 (9)	(6)				(2)	1 (1)	(1)		
기 획 과 학	3 (21)	3 (20)	3 (13)		(5)	(1)		(1)			(1)
행 정 사 회	1 (83)	1 (82)	1 (55)		(24)	(1)	(2)				(1)
교 육 환 경	2 (39)	2 (39)	1 (28)		(9)	1 (1)		(1)			
농 정	2 (20)	2 (19)	1 (6)		1 (11)	(2)					(1)
경 제 문 화	3 (43)	3 (43)	2 (18)		1 (21)	(2)	(2)				
건 설 소 방	(20)	(20)	(11)		(6)	(2)		(1)			
특 별	(25)	(25)		(25)							
본회의	2 (33)	2 (32)	1 (2)			(2)	(5)	1 (23)		(1)	

※ ()내는 제7대 의회 누계

IV. 민원처리

1. 청원

구 분	접 수			처 리	처리중
	계	이 월	금 회		
금 회					
누 계	1		1	1	

※ 누계는 제7대 의회 실적

2. 진정

가. 접 수

위원회	계	행 정	사 회 문 화	교 통	건 설	교 육	경 제	환 경	농어업	기 타
계	5 (111)	4 (12)	(13)	(11)	(20)	(9)	(8)	1 (14)	(10)	(14)
의 회 운 영										
기 획 과 학	(5)		(1)		(1)		(1)			(2)
행 정 사 회	3 (15)	3 (8)	(3)	(1)	(1)					(2)
교 육 환 경	1 (24)			(1)		(9)		1 (13)		(1)
농 정	(9)			(1)	(1)				(7)	
경 제 문 화	1 (24)	1 (1)	(9)	(3)			(7)			(4)
건 설 소 방	(31)	(3)		(5)	(17)			(1)	(3)	(2)
특 별 위원회	(3)									(3)

※ ()내는 제7대 의회 누계

나. 처 리

위원회	처 리					처리중
	계	처 리	불수리	취 하	타기관 이 송	
계	5 (110)	5 (110)				1 (1)
의회운영						
기획과학	1 (5)	1 (5)				
행정사회	4 (15)	4 (15)				
교육환경	(23)	(23)				1 (1)
농 정	(9)	(9)				
경제문화	(24)	(24)				
건설소방	(31)	(31)				
특별위원회	(3)	(3)				

※ ()내는 제7대 의회 누계

V. 본회의 보고사항

1. 의안 접수사항

제 출 자 (제 출 일)	의 안 명	소관위원회 (회 부 일)
경상북도교육감 (2005. 3. 4)	경상북도 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교육환경 (2005. 3. 8)
경상북도지사 (2005. 3. 4)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행정사회 (2005. 3. 8)
경상북도지사 (2005. 3. 4)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조례안	농 정 (2005. 3. 8)
경상북도지사 (2005. 3. 8)	경상북도과학기술진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기획과학 (2005. 3. 8)
경상북도지사 (2005. 3. 8)	경상북도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기획과학 (2005. 3. 8)
경상북도지사 (2005. 3. 8)	경상북도 지역정보화추진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기획과학 (2005. 3. 8)
의 회 운 영 위 원 장 (2005. 3.10)	대한민국 경상북도의회 국제친선의원연맹과 일본국시마네현 일한친선의원연맹과의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파기의 건	의회운영 위 원 회
경상북도지사 (2005. 3. 14)	동북아시아지역 자치단체연합사무국설치 및 운영지원조례안	경제문화 (2005. 3. 14)
정무옹의원의외 14인 (2005. 3.16)	경상북도 울릉군민 여객선 운임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경제문화 (2005. 3.16)
경상북도지사 (2005. 3.22)	대한민국 경상북도와 일본국 시마네현간 자매결연 철회의 건	경제문화 (2005. 3.22)
교육환경위원장 (2005. 3.25)	신한일어업협정 재협상 촉구 건의문	교육환경 (2005. 3.25)

2. 조례 공포사항

이 송 일	이 송 처	건 명	공 포 일
2005. 2. 15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	2005.2.21
2005. 2. 22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	2005.3.3
2005. 2. 22	경상북도 지 사	경 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 개정조례	2005.3.3
2005. 2. 22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실무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05.3.14
2005. 2. 22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	2005.3.14
2005. 2. 22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2005.3.14

3. 위원회 활동사항

위원회	일시(기간)	장 소	활 동 내 용
농정위	2005.3.9(수)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일원	◦ 폭설 피해지역 현지 확인 · 참 석 : 이용석 농정위원장, 정상진 간사, 강영서, 김주연, 박승학, 방유봉, 손규삼, 손만덕, 신영호, 이상효의원
의 회 운영위	2005.3.10(목) 11:00	운영위원회 회 의 실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 협의안 - 대한민국 경상북도의회 국제친선의원연맹과 일본국 시마네현 일한친선의원연맹과의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파기의 건 - 제198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 참 석 : 안순덕 운영위원장, 박승학 간사, 김병진, 김순견, 우성호, 이호근, 장미향, 정무웅, 정상진, 한혜련, 황복희, 황상조의원

VI. 기타사항.

○ 국정원 도 조정관 접견

- 일 시 : 2005. 2. 18(금) 11:00
- 장 소 : 의장실
- 참 석 : 이철우 의장

○ 2005년도 경북통합방위지방회의

- 일 시 : 2005. 2. 18(금) 15:00
- 장 소 : 구미시민복지회관
- 참 석 : 이철우 의장, 이용석 농정위원장

○ 일본 시마네현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과 관련 성명서 발표

- 일 시 : 2005. 2. 23(수)
- 발표자 : 이철우 의장

○ 2005년 농업경영인 연찬 교육

- 일 시 : 2005. 2. 25(금) 11:00
- 장 소 : 구미선산문화회관
- 참 석 : 이용석 농정위원장(축사)

○ 동남아지역 자매결연체결 및 방문

- 일 시 : 2005. 2. 20(일) ~ 2. 26(토)
- 장 소 : 베트남, 인도네시아
- 참 석 : 채희영 경제문화위원장

○ 베트남 새마을회관 준공식 참석

- 일 시 : 2005. 2. 20(일) ~ 2. 25(금)
- 장 소 : 베트남
- 참 석 : 한혜련 경제문화위원회 간사

○ 독도 관련 인터뷰(대구 TBC방송)

- 일 시 : 2005. 2. 28(월) 15:00
- 장 소 : 의장실
- 참 석 : 이철우 의장

○ 제86주년 3. 1절 기념행사

- 일 시 : 2005. 3. 1(화) 10:00
- 장 소 : 안동시민회관
- 참 석 : 이철우 의장, 나종택 행정사회위원장, 장대진 의원

○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간담회 개최

- 일 시 : 2005. 3. 4(금) 12:00
- 장 소 : 의장실
- 참 석 : 이철우 의장, 안순덕 의회운영위원장, 정보호 교육환경
위원장, 채희영 경제문화위원장

○ 경북경영자협회 정기총회

- 일 시 : 2005. 3. 9(수) 11:00
- 장 소 : 구미센츄리호텔
- 참 석 : 이철우 의장(축사)

○ 의회 고문변호사 위촉장 교부

- 일 시 : 2005. 3. 10(목) 11:00
- 장 소 : 의장실
- 참 석 : 이철우 의장, 안순덕 의회운영위원장, 이원만 기획과학
위원장, 정보호 교육환경위원장, 박승학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병진 기획과학위원회 간사

○ 범도민 혁신확산대회

- 일 시 : 2005. 3. 10(목) 14:00
- 장 소 : 경산시민문화회관
- 참 석 : 이철우 의장, 황상조 행정사회위원회간사

○ 전국 시·도의회 의장 협의회

- 일 시 : 2005. 3. 11(금) 14:00
- 장 소 : 대구인터불고호텔
- 참 석 : 이철우 의장

○ 경상남도의회 운영위원회 방문

- 일 시 : 2005. 3. 11(금) 13:30
- 장 소 : 운영위원실
- 참 석 : 안순덕 운영위원장, 박승학 운영위간사

○ 경상북도 생활개선회 임원 이·취임식

- 일 시 : 2005. 3. 11(금) 14:00
- 장 소 : 경상북도 농업인회관
- 참 석 : 이정백 부의장(축사), 김정자 예결특위간사, 방대선 의원

○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청사 준공식

- 일 시 : 2005. 3. 11(금)
- 장 소 : 품질관리원 경북지원
- 참 석 : 손규삼 부의장, 이정백 부의장, 이원만 기획과학위원장,
권경호 예결특위 위원장, 박승학 의회운영위 간사,
권종연 의원, 김정기 의원, 장미향 의원

VII. 도정질문

제197회(임시회)

2005년 3월 15일(화) 제1차 본회의

□ 方大善議員

오늘 본의원은 비통하고 비정한 심정으로 이 단상에 서게 되었습니다. 특히 내일이면 일본 시마네현이 본회의에서 “다케시마의 날”로 지정하는, 그런 눈앞에 처해 있는 현실을 두고 볼 때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이 독도 문제를 좀더 심도 있게 이 본회의장에서 지사님과 더불어 토론을 하려고 했습니 다만 며칠 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지사님께서 시마네현의 어떠한 결과를 보고 결연파기를 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절대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일본 침략주의자들로부터 우리 3백만 도민이나 우리 국민들이 그 망언과 그 망동에 의해서 엄청난 상처를 입었습니다. 자존심과 자긍심은 말할 것도 없고 온 나라가 지금 시끌벅적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아직도 우리가 일본의 행위를 보고 난 다음에 우리의 어떠한 의사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뭔가 아직도 우리의 어떠한 현실을 올바르게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사님께 묻고자 합니다.

더 이상 우리 경상북도 도민과 대한민국 국민에게 상처를 주는 그러한 일들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동안 우리가 독도 영유권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항의서한이나 보내고 유감이나 표시하고 규탄결의문이나 낭독하고,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을 해왔기 때문에 엄청난 문제가 파생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더 지난날의 우리들의 어떠한 과오를 다시 한번 되새겨볼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교류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와 경상북도는 내일 결과의 추이를 보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하겠다 이겁니다.

얼마나 더 우리가 우리 도민들에게, 또한 나아가서 우리 국민들에게, 이해당사자인 우리가 얼마나 더 큰 상처를 줘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제 더 이상, 쪽바리들한테 더 이상 배울 것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뭘 배우겠습니까? 교류라는 것은 서로 잘 한 것을 서로 나누어가지고 좋은 것을 더 좋게 얻

기 위해서 하는 것이 교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우리가 얻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얻었다고 해봐야 상처밖에 얻지 않았습시다.

그래서 저는 일본 침략주의자들의 그 도둑질하는 도둑놈의 근성을 더 우리 도민들이, 국민들이 배우기 전에 오늘 지사님께서 3백만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모인 이 자리에, 또한 민의를 대변하는 본회의장에서 결연한 의지로 지사님의 확고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성주출신 방대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300만 도민의 복지와 전인 교육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이의근 도지사님과 도승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 지역사회는 매우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경제적 양극화, 침체되어 있는 서민경제, 사상초유의 실업률 등은 우리의 어려운 현실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큰 문제는 우리 경상북도는 농도이면서도 농촌은 활력을 잃어 가고 있으며, 농민은 희망대신에 절망마저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가인구의 급속한 감소와 초고령화, 농가실질소득의 감소는 물론 농가부채의 급증,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격차 확대, 낙후된 농촌의 복지 및 교육여건 등이 그러한 현실들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본의원이 드리는 질문도 우리 경북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들 중의 하나들로 성의 있는 답변은 물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 및 농촌문제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개방화에 대비하여 경북도정의 우선순위는 경제도정 실현과 함께 농업경쟁력 확보로 대변되는 농업도정이 핵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동안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선 농업과 농촌의 현실은 아직도 어두운 터널 속에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지난해 쌀 협상 결과, 후속 절차로 2005년 올해부터 본격적인 쌀 시장개방 원년으로 수입쌀이 소비자 장바구니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농림부는 지난 3일 쌀소득등의보전에관한법률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올해부터 쌀농가소득보전직불제 시행과 공공비축제 도입 등 전면적인 양정제도 개편을 추진키로 함에 따라 현장 농민들은 정부의 이런 결정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80kg 기준 목표가격 17만70원과 산지쌀값 차액의 85%를 보전해 주는 수준으로는 생산비도 보장받을 수 없다는 등의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얹친 데 덮친 격으로 농민들의 반대 속에서 지난해 2월 한·칠레 간 자유무역협정

(FTA)이 이미 국회에서 비준되고, 4월부터 발효된 데 이어 올해부터는 우리 정부가 전 세계 24 개국을 상대로 동시다발적 FTA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아세안,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과의 FTA 체결 시 농업분야에 주는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평소 농업도정의 중요성을 내세워 오신 지사께서는 이와 같은 국제적 농업환경에 대응하고 경북농업의 경쟁력 확보와 안전망 구축을 위해 그 동안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성과는 그렇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일련의 농업개방 요소에 대비한 경북농업의 청사진을 다시 한번 제시해 주십시오.

또 경기도는 맞춤형농정, 경남도는 수출농정 등 주변의 광역자치단체들은 제각기 특성화, 자율농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과연 경북농정의 자율성과 특성화를 위한 자율농정의 장기적 로드맵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 농촌, 농민의 문제는 더 이상 일과성과 일회성의 땀질식 대응논리로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과 농촌은 단순한 산업적 기능이 아닌 역사와 전통, 나아가 정주환경적 기능에다 앞으로 대두되고 있는 삶의 질 향상과 환경적 기능까지 접목된 종합적 보전과 유지라는 시대적 명분에 눈을 떠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의 환경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농촌에서 태어나 오랫동안 직접 농촌 현장을 체험해 오면서 여러 가지 느낀 점이 많으나, 특히 농촌지역의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문제해결을 위해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이 문제와 관련해 몇 가지 질문과 함께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환경오염의 심각성은 우리 농업 내부에서도 이미 오래 전부터 존재해 왔으며, 날이 갈수록 더도를 더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통적인 농업은 생산방식에 있어서 유기물질의 순환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자연환경 보전에 오히려 긍정적인 면으로 작용을 해 왔습니다.

과학기술을 응용한 현대적인 농업기술은 인류를 기아로부터 해방시켜 주었으나, 자연환경을 오염시키는 부정적인 측면도 함께 가져다 준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농업에 있어서 환경오염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연구와 함께 정책과제에 도입이 되어야 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에서도 이러한 맥락에서 친환경, 첨단과학기술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들을 수립하고 예산을 투입해 왔으며, 올해도 지속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지난해 농촌지역 오염방지와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농토 배양사업의 일환으로 “푸른 들 가꾸기 사업”과 토양개량제 공급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실적 및 효과와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온실효과의 영향 등으로 매년 겨울철 날씨가 따뜻해 저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도 이제 겨울철을 이용하여 노는 땅에 녹비작물인 자운영, 호밀, 이탈리아 라이그라스 등의 겨울철 사료, 녹비작물의 생육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들 녹비작물의 재배를 활성화하여 조사료 생산증대, 경관유지, 지력증진, 표토 유실방지 및 관광자원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라남도 함평 등지에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겨울철에 자운영을 재배해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례입니다.

자운영 재배 시 쌀 5% 증산과 질소비료 사용의 약 50% 절감효과와 관광산업화 등으로 성공한 예를 볼 때, 화학비료의 과다한 사용으로 인한 토양오염 방지와 농업의 공익적인 기능을 증진시켜 나가는데 매우 적절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에서도 농촌지역에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이 사업이 농업인들의 환경사랑운동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백색혁명으로 지칭되는 비닐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입니다.

지난해 농업 부분에 사용된 비닐량이 전국적으로 약 10만 톤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나, 이 중 회수된 것은 불과 35%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아마 우리도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 회수 된 비닐은 농촌지역의 자연경관 훼손은 물론 토양생태계를 교란시켜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 시킨다고 봅니다. 우리 도에서도 이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폐비닐 수거기를 공급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실태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폐비닐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도 친환경적이며 고부가가치의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친환경 농업지구의 선정과 친환경들관사업 등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실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언급되었습지만 경북 쌀의 브랜드화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환경보전적 농업의 투자에 대한 재정보조나 정책자금 지원, 소득보조 등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일반화 되어 있는 정책이라고 볼 때 우리 도에서도 환경보전적 농업에 관련된 기술개발이나 영농방법의 개선에 대한 보다 과감하고 심도 있는 지원과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농촌환경보전 문제는 주민들의 환경에 대한 의식수준에 따라 성패가 좌우됨을 감안할 때 농민들에 대한 환경교육의 강화 역시 절실하다고 생각을 하며, 이를 통해 농민들 스스로 환경보전형 농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경도대학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도대학은 지난 1996년 12월 농촌지역 인재들에게도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도립으로 설립된 학교입니다. 하지만 설립 후 지금까지 경도대학은 각종 잡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2000년에는 1998년 교수채용과 관련해서 비리의혹이 제기되어 내홍을 겪었고 결국 당시 학장은 사퇴를 하고 경찰청장 출신인 김광식 현 학장이 취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 학장이 취임한 이후에도 학내갈등은 여전하였으며 2002년 10월에는 2002년 교수채용과정에서 비롯되어 교수는 물론 학생들까지 갈등이 빚어져 학내소요사태를 겪기도 하였습니다. 경도대학을 둘러싸고 벌어진 여러 사건들의 결과야 어떻게 되었든지를 떠나서 300만 도민의 염원을 품고 태어난 대학이 개학초기부터 지금까지 갈등과 대립이 끊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에 본 의원은 심히 부끄러울 뿐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갈등과 대립은 학생수급 상황 등과 같은 대학경영의 논리보다는 무작정 지역개발이라는 정치적인 이유에서 설립되었던 때문이라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큰 문제는 경도대학이 현재 지역사회에서 과연 대학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가하는 의구심입니다.

지금 전국의 대학교 및 대학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살아남기 위해 그야말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을 한다, 통폐합을 한다 등 그야말로 뼈를 깎는 고통을 통해 새로운 환경과 질서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상북도의 도립대학이라고 하는 경도대학은 그 와중에도 공립대학이라는 울타리에 앉아 그야말로 세상의 어려움과는 단절되어 무풍지대에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더욱이 예전에 소재하고 있는 경도대학은 그 인근에 안동과학대학, 안동정보대학, 가톨릭상지대학 등의 전문대학은 물론 안동의 안동대학교, 영주의 동양대학교 등 인구는 한정되어 있는데 너무나 많은 대학들과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더욱이 저출산으로 초중고생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보니 신입생 모집난은 앞으로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대구시내 전문대학들의 경우에도 신입생 충원율이 절반에 불과한 상황에서 다른 전문대에 비하여 등록금이 싼 점을 빼고 특별한 점을 찾기 어려운 경도대의 지원율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

그에 따라 도립 경도대학 학생 1인당 도비지원액은 연간 600만원에 육박하는 등 '97년 개교이후 지금까지 약 412억원 가량의 도민의 혈세를 쏟아 부었으며, 앞으로도 도의 부담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의원은 이대로 계속 가기에는 문제가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경도대학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자꾸 감추고 은폐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환부가 더욱 커져 무서운 종양이 되기 전에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하여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경도대학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든지 아니면 더 늦기 전에 민간으로 이전하든지 등의 그 존폐를 결정해야 할 시점에 왔다고 보여지는 바 이에 대한 용단을 빠른 시일내에 내려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과 관련하여 우리 경북은 이들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24일 수도권 및 대전을 제외한 12개 광역시·도에 한국전력,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 지방이전에 따른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공공기관을 시도별로 1개씩 배치하고 그 외 근무자 수 기준으로 2천 내지 3천명 정도의 기관을 평균적으로 10여개가 시·도별로 배치 가능하다고 밝히고 3월 중 이전대상 기관 및 시도별 배치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2일 『행정중심도시건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수도권 발전대책을 보완하기 위해 공공기관 이전계획 발표 시기를 다시 4월초로 연기한 바 있습니다. 모든 자원이 수도권으로 몰려있는 현실을 타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행정도시의 건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등을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서두를 때는 언제이고 행정중심도시건설이 가시화되자마자 수도권발전대책부터 먼저 세운다고 하니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처음부터 생색용이 아니었나 하는 의심마저 듭니다. 어찌되었던 우리 경북으로서는 지금 당장 공공기관 하나라도 더 유치해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190여개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취지에 맞게 정부의 지침대로 시도별 특화산업, 전략산업, 잠재력 등을 기준으로 공평무사하게 배치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달 이미 태권도공원 선정에 있어서 정부의 졸속적인 처사에 이미 경험한 바 있습니다. 원전폐기물 51%를 놔두어도 묵묵히 참아온 경북도민과 경주시민들을 우롱하면서까지 정치적인 의도가 개입되어 아직도 납득하기 어려운 지역을 태권도공원으로 선정한 경우를 본다면 공공기관 지방이전도 공정하고도 형평성있게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 정치권의 입김에 따라 공공기관의 지방배치가 좌우될 수 있다는 소리도 들리며 한전·가스공사는 호남권, 주택공사는 충청권, 토지공사는 부산에 내정되었다는 등의 소문도 계속 들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하여 현재 우리 경북의 노력과 그에 상응한 가시적인 성과는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 또한 중앙정부로 하여금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 복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균형 발전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수도권에 위치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대하여 말씀을 이미 드렸습시다만 본 의원은 우리 경북에서도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경북의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상북도 산하의 공공기관도 일선 시·군으로 이전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경상북도청을 현재의 대구에서 경북의 어느 지역으로 옮겨야만 할 것입니다.

도청이전문제에 대하여는 지역사회에서는 물론이고 우리 의회에서 수없이 논의되어 왔지만 한번도 속 시원한 대안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 다시 경북·대구 통합론이 이야기되면서 도청이전문제는 완전히 이슈에서 멀어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도청이전 문제가 워낙 중차대한 문제라 보다 신중한 논의와 토론이 진행되고 300만 도민의 의사가 결집되어야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본 의원도 이 자리에서 자세한 논의를 유보하겠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도청이전문제는 설사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있어 당분간 옮기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도 산하 나머지 사업소 등은 모두 경상북도의 일선 시군에 이전되어야만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 산하의 공무원교육원, 종합건설사업소, 농업기술원 및 농산물원종장, 가축위생시험소 등이 대구광역시에 있어야 할 이유는 무엇인지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 도 산하 사업소 등을 재정자립도, 인구, 기능, 환경 등을 감안하여 경북의 각 시·군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겨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유념하여야 할 것은 그동안 경상북도의 주요한 개발정책의 대부분이 경북의 북부와 남부만을 고려하여 왔고, 또한 최근에는 동해안 개발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경북의 서부권은 상대적으로 철저히 소외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안동 등을 중심으로 한 북부권은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포항, 경주 등을 중심으로한 동부권은 기업도시 및 역사문화도시 조성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고령 대가야, 성주 성산가야 등을 중심으로한 가야문화권 개발사업에 보다 많은 투자를 통하여 우리나라 고대역사를 재정립하여 민족의 정신을 바로 세우는 출발점임을 각인시켜야 할 것입니다.

지역균형발전과 도 산하 기관들의 도내 지역 이전에 대하여 연계를 시키고자 한다면, 가령, 성주지역의 경우를 예로 들면 성주지역은 예로부터 기후조건이 그 어느 지역보다 양호하여 자연재해 등이 극히 적고 평야지역, 산간지역 모두를 끼고 있어 각종 농산물을 시험하고 재배하는 가장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기에 농업기술원의 입지로서는 최적지라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주를 비롯한 고령, 칠곡 등은 언제나 주요한 정책대상에서 소외되어 발전전략에서 들러리역할만 해왔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중앙정부차원에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국가균형발전을 최종목표로 하듯이 경상북도 차원에서 도 산하 기관을 경북지역에 분산 재배치하고 특히 지역개발에서 소외된 서부권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 금고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의 도 금고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협중앙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지난 1997년 7월 1일자로

도 금고를 제일은행에서 농협중앙회로 옮겼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운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농협중앙회는 도금고를 운용하면서 다양한 측면에서 경상북도의 발전에 기여하고 공헌해왔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농협중앙회가 다른 시중은행이나 지방은행과 별 차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1997년부터 계약갱신을 거듭하여왔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도 금고 뿐만 아니라 일선 시·군의 금고까지 모두 농협중앙회가 자금을 운용하는데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가 농도이다보니 농협에서 일괄적으로 공공기관 금고를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는 지역주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지방재정자금으로 지방경제 활성화와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듯이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꾀하고 지역자금의 역외유출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조성된 공공자금이 지방은행 등 지역금융기관에 전담예치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즉, 본 의원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도 금고가 어느 은행으로 되든지 경상북도는 물론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고 지역경제에 보다 기여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농협중앙회가 도금고로서의 계약기간 만료가 될 경우 지난 1997년부터 별다른 이유없이 도 금고를 농협중앙회에 맡겨오던 것을 탈피하여 도 금고 선정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기존의 농협중앙회 및 타 은행들을 비교 과연 어느 은행이 도민들을 위하여 보다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평가하고 그를 통해 도 금고를 합리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충질문】

○方大善議員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많은 고생을 하셨고, 특히 오늘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어떻게 보면 우리 지사님께서 정치적으로 결단을 내려주셔야 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독도 문제도 분명한 입장을 밝히셨습시다라는 중앙 정부 외교적인 문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 때문에 지사님께서 명확한, 확고한 의지를 밝히지 못하셨다는 데 대해서 한편으로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동안 우리 경상북도가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했던 부분들을 앞으로는 국제적인 어떤, 우리하고 이해관계가 되는 어떠한 부분들이 대두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는 그런 도민의 기관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역균형발전, 특히 서부권 발전 문제라든지 경도대학 문제, 또 도금고 문제는 지사님께서 이제 3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도 하셨고 또 우리도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역할도 하셨습니다. 또 많은 업적도 남기셨다고 저 역시 인정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임기에 다음에 더 큰 역할을 하실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사님 임기 내에 잘된 점, 못된 점, 공과를 분명하게 가려서 잘못된 점이 있다면 미래의 도정을 위해서 한번쯤은 걸러주고 진단을 한번 해 보시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문제는 정치적인 어떠한 입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루속히 좀 빠른 시일 내에 어떠한 결단을 내리셔서 마지막 역할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張美香議員

상주시 출신 교육환경위원회소속 장미향의원입니다.

본의원에게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300만 도민의 복지와 전인교육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이의근 도지사님과 도승희 교육감님을 비롯하여 도정업무추진에 바쁜 가운데에도 답변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질문 드리기에 앞서 방대선의원님께서도 강한 어조로 질문을 하셨지만 최근 우리들을 분노케 하는 일이 있어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엄연한 한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를 두고 일본 시마네현이 최근 보여준 망언과 망동에 대하여 우리 경상북도의회 의원들은 물론 300만 경북도민들 모두 공분을 금할 수 없으며 다시 한번 그들의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제 3월16일 바로 내일입니다. 시마네현은 처음부터 아무런 역사적 근거도 국제법상의 논리에도 맞지 않는 독도의 날을 제정하고자 본회의에 상정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엄중한 경고를 보냅니다. 영원히 후회하게 될 일을 한치 앞도 못 본채 어리석은 결정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연일 전 국민의 분노가 거세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아침 한 모자가 손가락을 자르면서까지 확고한 의지로 독도 지키기에 앞장서는 뉴스보도를 보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따라서 한·일관계의 상위개념을 넘어선 사안인 만큼 우리 경상북도도 이어져가는 대한민국의 역사에 오류를 남기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독도의 날’ 제정을 저지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어서 질문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2일 행정중심도시건설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행정중심도시건설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행정중심도시 건설과 함께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이 가속화될 전망에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늦어도 3월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며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연계하여 수도권과 대전, 충남을 제외한 전국 11개 시도에 도시 당 약 4,000여억원을 6년여 동안 투입하여 지역발전을 선도할 미래형 혁신도시를 건설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같은 계획들이 그대로만 진행되어진다면 이제까지 수도권에 집중된 기존의 국토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재편되어 10년 내에 지역거점을 중심으로 한 파이형 및 다핵 분산형으로 급속하게 바뀌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구조를 다시 만드는 빅 프로젝트를 앞에 두고 우리 경상북도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리고 전략적으로 무엇을 선택하고 집중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앞서 답변에서 지사께서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지만 이제까지 우리의 전략에 문제는 없었는지 철저히 살피고 300만 경북도민의 희망찬 미래를 만들기 위해 무엇이 진정으로 요구되는 것인지를 제로베이스에서부터 점검하고 후회없는 현명한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의원의 질문도 그러한 의도의 선상에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성의있는 답변과 후속적인 대책을 세우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지역특화발전 특구육성대책에 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글로벌시대에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으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 특화발전 특구육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특화발전 특구제도는 지난 2004년3월22일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이 제정되고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동년 9월23일 시행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특구지정 현황을 조사해본 결과 지난 해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17건의 지역특구지정을 신청받아 관계기관 협의가 완료된 7건을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전북 순창 장류산업특구 등 6건의 지역특구지정안이 2004년12월30일 의결된 바 있습니다.

금년 2월2일에도 전남 여수시의 오션리조트 특구 등 4개의 특구를 추가로 지정하여 현재 총 10개의 특구가 지정되었으며 재정경제부에 의하면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접수된 20여개의 특구지정안을 심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 국정최대의 과제로 등장하면서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시책을 발굴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냄으로서 자치단체마다 살아남기 위해 또한 한발 앞서 나가기 위해 치열한 생존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최근 국정현안으로 대두된 행정복합도시 건설과 미래형 혁신도시 및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 유치, 낙후지역개발을 위한 신활력사업 그리고 지역특화발전 특구육성정책은 각기 다른 과제이지만 결국 그 맥락은 같은 것이라고 본의

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주요 국정과제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대원칙과 정치적인 안배에 의해 지역별로 적절한 배분이 되겠지만 동일한 조건을 갖춘 여러 지역간에 경합이 벌어질 경우 지역기반과 당해 자치단체의 의지가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구로 지정되어도 당장은 정부의 재정지원이나 직접적인 혜택은 없다고 하여도 지역특구는 당해지역의 특성화를 나타내는 객관적인 지표가 될 것이며 특정분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육성 의지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2003년9월 재정경제부에서 특례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특구에 대한 예비신청을 받을 당시 우리 경상북도는 65개의 특구를 의욕적으로 발굴하여 신청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특례법이 시행되고 다른 6개 광역시도, 9개 기초자치단체에서 10개의 특구를 지정받는 동안 어느 지역보다 특구자원이 풍부한 우리 경상북도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특구지정신청을 기초자치단체에만 맡겨두고 너무 안일하게 대처함으로써 선점효과를 잃지 않았나 하는 우려를 표하며 경상북도 차원의 행정지원과 지도에 소홀하였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지난 3월3일 경상북도 시장·군수 간담회에서 공공기관 유치 등과 같은 지역개발사업에 도와 시군이 서로 유기적으로 힘을 모으기로 한 바와 같이 특구지정을 포함한 여러 가지 국정 현안과제에 대하여 우리 경상북도가 보다 적극적이고도 전략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 도에서 금년 중 20개의 특구를 지정받기 위해 절차를 밟고 있으며 12개의 특구는 상반기 중에 신청을 완료하고 시군별로 1개 이상의 특구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지역특화발전 특구육성을 위해 지금까지 준비해온 사항과 앞으로의 특구육성대책을 자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북의 컬러에 관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찬란한 신라문화와 신비의 가야문화 그리고 선비정신의 유교문화 등이 살아있는 민족문화의 원류이자 한국문화의 얼굴입니다.

또한 그러한 정신과 문화를 닮은 우리 300만 경북도민들은 화랑정신과 선비정신을 이어받아 의리와 뜻심, 정의감을 중시하는 굳건한 기상을 품고 있으며 아울러 조국 근대화의 주역으로서 드높은 미래개척정신으로 똘똘 뭉친 큰 역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의원 뿐만이 아니라 모든 300만 경북도민들이 이 같은 경북의 모든 것을 사랑하고 높은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 경북의 대내외적인 이미지는 우리의 애향심과 자긍심과는 달리 그 반대의 다른 모습으로 비추어지고 있는 듯하여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가령, 경북이라고 하면 일부 타지사람들로부터 낙후지역, 혹은 수구보수지역 등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때문에 우리 경북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장점과 잠재력을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실제 2000년부터 2004년 상반기까지 수도권기업이 경북으로 이전한 사례는 총24건으로 강원도 234건, 부산 104건, 대전 77건, 전북 68건, 충북 61건 등에 비하면 너무나 낮은 수치입니다.

이렇게 된 데에서는 물론 수도권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으려는 기업인들의 심리와 수도권 기업들에게 제대로 된 유치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은 탓도 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경북지역이 그들에게 매력적인 지역으로 인식되지 않은 탓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북지역으로 이전하려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게 기업활동 등을 원활히 할 수 있는 행정,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북지역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남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경북지역만이 갖고 있는 매력을 그들에게 어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얼마 전 우리 경상북도의 홈페이지를 유심히 관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경북을 알리는 첫 관문인 홈페이지에 들어가자마자 경북을 소개하고 있는 글들이 차례로 나오고 있었는데 이런 글들로 경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동북아 물류의 허브(Hub), 액티브(Active), 경북』, 『한국문화의 얼굴』, 『그린 파워(Green Power) 경북』 등입니다.

그 외에도 특정지역이나 특정기업이 경북을 대표하는 얼굴로 나오는 등 경북을 바르게 소개하는 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른 지역의 경우 서울의 『하이 서울(Hi Seoul)』을 비롯하여 대전시의 『잇츠 대전(It's Daejeon)』, 부산시의 『다이나믹 부산(Dynamic Busan)』, 충남의 『허트 어브 코리아(Heart of Korea)』 등이 이미 개발되어 지역의 브랜드를 높이고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에 본의원은 경상북도의 이미지를 발전적인 미래중심으로 전환하고 첨단 과학과 자연이 어우러지고 사통팔달 물류의 중심지로서, 그리고 동북아 시대의 허브(Hub)로서 도약하고 있는 선진 21세기 경상북도의 개발전략을 홍보하기 위해서 경북의 매력과 장점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경북의 브랜드 슬로건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특히 동북아 시대의 허브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경북이 갖고 있는 이미지 제고는 더욱 필수적입니다.

경이로운 태국의 ‘어메이징(amazing) 태국’ ‘진정한 아시아’라는 ‘트루리 (truly) 아시아’의 말레이시아 등이 바로 그러한 사례들입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도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높이고 도정 등에 대한 관심과 역량을 결집시켜 나갈 뿐만 아니라 일부 인식되고 있는 경북의 단점을 정서적으로 깨끗이 일소하고 고착화되고 만연된 경북도민들의 의식에 자신감을 불어넣어 새로이 일깨워

나갈 수 있으며, 나아가 동북아 시대의 중심지로서 경상북도의 위상 강화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사료되어지는 바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8일은 세계 여성의 날이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한국여성의 위상을 돌아보자면 한국여성의 현실과 지위는 과거에 비하여 많이 향상되었다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참정권을 비롯하여 각종 남녀의 법률적 동등권을 인정받고 있으며, 여성에게 교육, 직업, 정치, 사회에 대한 진출의 기회도 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더욱이 지난 3월2일에는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08년 1월1일부로 호주제도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찬반을 떠나 정말 놀라운 정도의 변화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여성이 각종 국가시험의 수석을 차지하고 예비법조인의 절반, 공무원 3명중 1명이 여성이며, 교직은 벌써 여성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그야말로 여성의 지위가 상승되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다양하게 늘어나고 있음에도 남녀 사이의 실질적인 불평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여성에 대한 차별과 비인간화의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장 시급하고도 더 큰 문제는 여성농업인의 문제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성농업인은 너무나도 열악하고 취약한 환경에 방치되어 있다시피 합니다. 여성농업인은 농사일 외에도 가사노동과 자녀교육, 시부모 부양 등 모두를 떠맡고 있지만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으며 혼자서 외로이 그 많은 짐들을 떠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농업인은 우리나라 여성들의 평균 노동시간 7.5시간을 훨씬 초과하는 11.6시간에 이르는 등의 과중한 노동으로 인해 여성농업인 대다수가 만성적인 근골육계통의 질병과 부인병을 앓고 있으나 관련한 의료혜택을 받기도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생활에 쫓기다보니 어쩔 수 없이 방치되다시피 하는 자녀교육, 꿈꾸기조차 어려운 문화생활, 늘어만 가는 농가부채 등은 여성농업인들로 하여금 농촌에 살고 싶다는 마음이 사라지게 할 뿐만 아니라, 젊은 여성농업인들이 유입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여성농업인들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과 처우를 개선해야만 한다는 소리가 하루 이틀에 걸쳐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본의원이 이렇게 또 다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모두 다 개선되어야 한다고만 하지 아무도 실천에 옮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2003년 10월21일 제182회 임시회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복지부문과 농촌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한 바 있습니다. 당시의 질문에 돌아온 답변은 ‘여성농업인의 역할과 비중은 높아지고 있으나 여성농업인의 처우개선은 미흡한 수준이다’라고 했으며, 농림부의 여성농업인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고 여성농업인의 조직 활성화를 위해 여성농업인정책협의회를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무려 1년6개월이 지난 지금에도 그때 당시의 상황과는 전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이에 지난 도정질문에서 요구하였던 여성농업인의 대책에 대한 향후 추진방안을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실시되고 있는 여성농업인의 복지와 위상 강화를 위한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실제로 여성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우선은 농가도우미제도의 적용 범위를 현재의 출산만이 아니라 자녀교육, 본인 및 가족의 질병 등으로 보다 확대하여 올해 실시 예정인 영농도우미제도와 병행하여 조속히 실시하고, 도우미 이용 지원단가를 현재의 3만원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단가로 현실화하고, 지원단가도 현재 30일에서 더 확대하는 동시에 신청 절차 등을 여성농업인은 물론 도우미 희망자들이 쉽게 접근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성농업인의 농업에서 차지하는 현실적인 비중을 고려하여 농촌의 각종 조합과 작목반 등의 임원, 대표위원 등 의사결정기구의 일원으로 선임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전국에서 4곳뿐인 여성농업인센터의 확대 설치와 농촌여성 전용 문화센터의 설치를 추진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도대학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996년 설립된 예천의 독립경도대학도 어느새 설립된 지도 8년여가 넘었습니다. 그동안 경도대학은 우리 경북지역의 유일한 공립대학으로 지역사회의 인재를 양성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지역민들에게 제공하는 등 그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며 발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그와 아울러 경도대학이 지나온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도 지적 받아 왔음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경도대학의 현재 사정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입생 충원율, 계속되는 예산지원 등 많은 난맥상을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본의원도 경도대학에 대해서는 직·간접적으로 누구보다도 문제를 제기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 내는 데에는 어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오늘 경도대학을 도정질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질타하려고 하기보다는 발상의 전환을 한번 해 보자는 차원에서 질문이라기 보다는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경도대학의 문제를 계속 부정적이기 보다 긍정적으로 보려고 노력하면서 경상북도민이 세운 대학으로서의 위상에 맞는 역할을 새로이 부여해 보자 하는 의도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 358개 대학중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87개 대학이 자의든 타의든 문을 닫아야 하는 운명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교육부

가 대학 구조개혁을 위해 내어놓은 최종안을 보면 통합에 합의하는 국립대학에는 4년 동안 해마다 200억원씩 지원하는 파격적인 재정지원 등 세부적인 구조개혁 촉진안 등이 담겨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대학 구조개혁 논의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즉,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자구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문을 닫아야 하는 생존경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립대학의 활성화 방안으로 평생교육원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열풍처럼 번지고 있는 영어마을을 개설하여 방학을 이용한다든지 용이한 기간이 있을 것이라 사료되기에 경상북도의 어린이, 청소년들은 물론 성인들에게 학습기회의 장을 만들어 확산시켜 볼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육청의 인사이동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곤혹스러운 부분을 제삼 거론할 수밖에 없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국가의 동량이 될 인재를 길러낸다는 사명을 가진 교육계가 교구비리와 관련하여 다른 시도 교육청은 학교 단위로 필요에 따라 교구 등을 구입하는 데에 비하여 경상북도교육청은 목적사업비로 책정, 일괄 구입하여 일방적으로 학교에 보내는 등 결국 특정업자의 잇속만 채워주는 결과를 초래하였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경찰에 입건되었던 청송 및 고령지역 직원의 경우 오히려 근무환경이 더 좋은 김천 및 고령으로 발령이 났다는 신문보도는 본의원이 의원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학부모로서 당황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또 지난 2월 중순에 경북교육청이 발표한 초·중등 교육공무원 정기인사에서 동료 여교사를 성희롱해 중징계를 받은 바 있는 한 초등학교 교장이 재임용된 데 대하여는 정말 경북교육청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의심스럽기까지 한 것은 본의원만의 생각입니까?

결국 최근의 인사를 통하여 경북교육청은 가장 도덕적이며 모범적이어야 할 교육현장이 오히려 도덕불감증에 걸려 있거나 명백히 잘못된 비리를 더욱 감싸고 있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 바 이에 대해 교육감께서는 최근 인사이동이 적절하게 단행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더욱더 당혹스러운 것은 정부가 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학교경찰제까지 들고나온 사실입니다. 그야말로 학교교육의 한계에 도달해 있거나 않은지 우리 모두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폭력의 무대도 학교 단위에서 지역 단위로 광역화, 조직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만사”라고 했습니다. 교육의 질이 곧 사회의 발전이나, 혹은 퇴보를 가져오느냐를 결정짓는 중차대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학교폭력은 반드시 근절시켜야 할 사회악이지만 교사의 권위에 상처를 주거나 지나친 위압감 때문에 학생 인권문제가 발생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지만 정부와 학교, 시민단체, 학부모가 올바른 교육 차원에서

해법을 찾고 공권력이 뒤를 받쳐주는 모양새이지만 결코 포기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張美香議員 이의근 지사님과 집행부 담당 국장님의 답변, 또 도승희 교육감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지역특화발전특구 육성대책에 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주낙영 경제통상실장의 부재로 이미 최윤섭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충분히 숙지하고 나오셨기 때문에 최윤섭 기획관리실장에게 묻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미 지정받은 특구는 지난해인 2004년10월에서 12월에 신청하여 전남 순창 장류산업특구를 비롯한 5개 특구는 2004년12월30일에, 또 경남 창녕 교육도시특구를 비롯한 3개 특구는 금년도 2월2일에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북은 이제 3~4월 중에 특구 신청을 할 예정이라니 너무 뒤쳐진 행정이 아닌지 의구심이 갑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자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張美香委員 실장님, 잠깐만요, 답변 도중에 죄송한데요.

그 부분은 이미 제가 질문하는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렇게 받은 지역이 10개 특구나 있는데 우리 경북에는 광활한 어떤 이점이 있는 또 특구를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65개나 지금 신청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하나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張美香議員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별로 자기 지역에 특구를 지정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보다도 자치단체장이나 그 자치단체에서 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실수는 미미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역특화발전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2장4조2항에 보면 일선 시·군에서 특구 지정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광역자치단체와 기초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의 장기종합개발계획과 연계해서 권역별로 몇 개의 특구를 집중 육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생각되는데 검토해 보신 바가 있는지 또는 계획이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張美香議員 지자체별로 따로 하는 것을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지자체도 있을 것 아닙니까?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지자체, 그런 곳 하고 우리 도 하고 연계해서 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張美香議員 그리고 두 번째로 지역특화발전예의안 제2장12조1항에 의하면 특구운영과 특화사업 지원을 위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자치단체조례제정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구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해서 관련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있으신지?

○張美香議員 예, 그 이미 저희가 숙지한 답변서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향후에는 답변서마다 노력을 하겠다 어떤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는 등의 의례적인 답변보다 도민들이 정말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용의주도한 승부근성을 보여주면서 실질적이고도 효율적인 답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예, 됐습니다.

○張美香議員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광원 농수산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의근 지사님께서 훌륭한 여성정책을 펼쳐 오시는 것은 전국의 여성들이 잘 알고 있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여성농업인 문제만큼은 좀 미흡하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지난 2003년10월21일 여성농업인에 관한 도정질문을 했을 때의 답변과 1년 6개월이 지난 오늘의 답변이 거의 틀리지 않는 문구에 정말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 경북의 농어촌에도 고령화, 또 여성화가 급속도로 심화되어 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추진하고 건의만 할 계획인지 묻고 싶습니다.

○張美香委員 물론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나 우리 경북은 농업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시·군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여성들의 직업보다 여성농업인에 대한 우대라든가 처우개선은 그렇게 빨리 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도정질문 자료수집을 하면서 경북여성농업인회 리더자이자 대표격인 한 회원에게 당신이 수년간 여성농업인 활동을 해 오는 동안 뚜렷한 처우개선이 된 사안이 있느냐고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답변은 단호하게 거의 개선된 것은 없고 관련 위원회의 약관명의 명단만 교체되었을 뿐이라며 분개했습니다.

국장님, 현실적으로 여성농업인이 농촌현장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그네들에게 향후 진정한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으로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인 지원을 하루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張美香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립경도대학의 활성화방안과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張美香議員 조금 전에 본의원이 제안하고 질문한 취지는 현재 전국적으로 국립대학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선호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 우리 도립경도대학의 활성화방안에 대한 기초진적인 제안이었습니다.

○張美香委員 앞으로 경도대학을 살릴 자구책이 있는지? 또 문을 닫을 것인지? 대책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안한 본질을 인식하고 적합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조금전에 답변하신 것은 본질하고 좀 다른 이유로 답변하셨습니다.

○張美香議員 국장님 지금까지 경도대학은 우리 경상북도에서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까지 예산지원만 해도 엄청난 예산이 지원되었고...

○張美香議員 또 하는 만큼 어떤 발전방안이 나온다거나 학교가 되살아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으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시설을 활용해서 또 개별적인 프로그램 마련을 방안해서 경도대학을 한번 작은 부분이지만 살려보자는 의도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張美香議員 앞으로 이 부분을 좀 숙지하셔서 뭔가 경도대학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점차 큰 것 보다는 작은 것부터 실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張美香議員 이상입니다.

第197回(臨時會)

2005年3月16日(水) 第2次 本會議

□ 禹成浩議員

영주시 출신 경제문화위원회 소속 우성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도정 질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의근 도지사님, 도승희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그 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지난 한해를 돌이켜 보면, 본의원에게는 지난 한해는 참으로 커다란 시련의 한해였습니다. 이처럼 큰 시련을 극복하게 된 것은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과 격려에 힘입은 바 참으로 컸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더욱 의정활동에 충실함으로써 보답할 각오임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본의원은 최근에 국·내외에서 빚어지고 있는 현안문제, 특히 독도문제와 행정도시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의 중요 사안을 지켜보면서 지방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자세를 더욱 가다듬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각오와 자세로 이번 도정질문에 임하면서, 이번도정질문에서는 지역균형발전, 경북북부권 교통망개선, 영주지역 독립의료원 설립 타당성조사 후속대책, 농촌문제 등 네 가지 주제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인 지역균형 발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 발전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명분은 국토균형발전이지만 실제로는 선거만을 의식하여 오히려 지역불균형을 조장하는 정략적 접근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지역간 마찰과 갈등의 골을 깊게 만드는 것 이를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수도권 집중 및 과밀해소를 위해서 충남 공주 연기 지역에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한다는 행정도시건설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수도권 공동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여당이 서둘러 수도권개발계획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해소라는 당초 취지는 어디로 가고 선거만 눈에 보이는 모양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지방이전도 그렇습니다. 시·도별 면적, 규모, 특성 등을 무시한 채 시·도별 일률배분원칙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며, 무원칙의 극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현정부는 경제자유구역, R&D 특구, 태권도공원, 축구센터 등 입지선정에서 항상 대구·경북에 불리한 기준을 적용하고, 들러리만 세워 왔습니다. 이번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있어서도 또다시 그 재판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다음 몇 가지를 묻습니다.

첫째, 우리 도는 경제자유구역, R&D특구, 태권도공원, 축구센터 등 입지선정에서 계속 소외되고 있는데 그 이유 및 그동안의 우리 도의 노력과 향후 대책을 밝혀주시고, 둘째,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시·도별 일률배분원칙으로 진행되는 데 대한 입장과 대책, 그리고 우리 도에 이전될 공공기관의 시·군 입지선정 기준 및 절차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균형 개발문제는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임과 동시에 우리 도의 지역개발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이기도 합니다.

경북 북부지역은 전국에서도 가장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진흥법에 의거해서 북부권 11개 시·군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여 1996년부터 단계별로 개발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국가 세입부족과 민자유치부진으로 개발추진이 지지부진하던 터에 이번에 그나마 지방양여금 제도가 폐지되면서 향후로는 그나마 그 지속 추진이 사실상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 대책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앞으로 개발촉진지구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는 2001년 8월 수립한 제3차 경상북도 종합계획에서 경상북도 전역을 북부, 동부, 중서부, 남부의 4개 대 생활권으로 구분했고, 각 생활권의 특성에 따라 기능을 배분하고, 발전 방안을 수립,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제3차 경상북도 종합대책에서는 북부권의 범위를 안동, 영주, 봉화, 영양, 청송, 문경, 예천 등 7개 시·군으로 보았으나 여기에 상주, 의성, 울진, 영덕을 포함한 11개 시·군으로 범이 오히려 타당하고 일반적인 듯 합니다.

이들 생활권을 살펴보면 대체로 동부는 포항, 중서부는 구미, 남부는 경산을 각각 그 중심도시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도는 안동을 북부권의 중심도시로 보고 각급 도립기관 배치와 중요시책사업추진을 안동위주로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북부권에서 안동이 비록 지리적 중앙에 위치하기는 하나 경제적 구심력을 발휘하지는 못하고 있는 터이므로 북부권을 안동, 영주, 상주, 울진권으로 세분해서 운영함이 오히려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두번째 주제인 경북북부권 교통망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북 북부권의 낙후성은 철도, 도로, 항공 등 기간 교통망에서도 확실히 드러납니다. 경북 북부 지역의 인구감소는 일자리, 의료, 교육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한 것이지만 교통망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부진도 그 주요한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철도 분야를 본다면 경부선과 호남선은 지난해 KTX 개통으로 바야흐로 고속철도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경북북부지역을 관통하는 중앙선은 아직 복선화조차 되지않고 있습니다. 전국에서도 대표적인 저속철도 지역에 머물러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경북종합계획에 의하면, 중앙선 복선전철화사업은 2010년 이후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철도사업에 대한 정부의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철도시설을 담당할 철도시설관리공단이 작년 출범한데 이어, 철도운영을 담당할 한국철도공사가 금년 출범했습니다.

중앙선 복선전철화 사업과 문경-충주간 철도시설 등 지역내 철도 부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철도시설관리공단의 경북도내 지역본부 설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부산, 원주에 지역본부가 설치되어 있을 뿐 우리 지역에는 현재 철도시설관리공단 지역본부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는 사실상 철도청 영주지역본부에 있던 기능을 원주로 이전한 것으로서 현정부의 대구·경북 차별의 또 다른 실 사례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철도시설관리공단 영주지역본부 설치 이는 시급히 그리고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로 분야를 본다면, 중앙고속도로와 중부내륙고속도로의 연이은 개통으로 수도권으로의 도로망은 획기적으로 확충되었지만, 경북북부권의 내륙과 해안을 관통하는 동서 도로망은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상주-영덕간 동서 6축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경북 북부권 교통수요를 본다면 문경-예천-영주-봉화-영양-울진을 관통하는 동서 5축 고속도로건설이 오히려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번 행정도시건설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행정도시가 건설되면 전국적으로 가장 불편해 지고 더욱 소외되는 지역이 바로 경북북부권과 강원 태백권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경북북부권과 대전-충남권 간의 접근성 개선 방안이 시급해졌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두 가지 고속도로망 확충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문경-울진간 동서 5축 고속도로 구간 중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를 연결하는 문경-영주 구간만이라도 우선 추진할 것과 둘째, 행정도시건설과 연계하여 문경-상주-보은-대전간 직통 고속도로 신설을 추진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주제인 영주지역 도립의료원 설립타당성조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지난 2003년 11월 서울 가톨릭대학교에 영주지역 도립의료원 설립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였고, 이 조사결과보고서는 2004년 5월에 도지사에게 제출되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 제출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했음에도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2004년 8월 관련 실·국에 후속조치를 협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랬는데도 여전히 가시적 후속 조치가 없기에 부득이 이번 도정질문으로 후속 조치를 강력히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서울 가톨릭대학교의 조사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첫째, 영주시에는 33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이 필요한 반면 현재 의료원이 소재하는 안동시는 400병상 정도가 과잉상태라는 것입니다.

둘째, 영주시에 33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을 신설할 경우에 연간 50억원 이상의 적자가 예상되니까 경제성 측면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셋째, 의료서비스 확충을 위한 대안으로 민간의료기관을 종합병원으로 육성하는 방안과 지방공사 안동의료원의 재배치 추진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생각컨데 민간의료기관을 종합병원으로 육성하는 방안은 안동병원 등과의 경쟁력 측면에서도 비현실적인 방안입니다. 경북북부권의 급속한 고령화 추세를 감안할 때 현재의 안동의료원을 경북북부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노인장기요양시설로 기능 전환하는 것을 전제로 안동의료원의 응급진료기능을 영주로 이전하는 의료원 재배치 방안은 참으로 적절한 방향제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집행부에 다음 몇 가지에 대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첫째, 그 동안 용역결과 보고서에 따른 후속 조치가 없었던 이유를 밝혀주시고,

둘째, 지방공사 안동의료원을 재배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평가를 바라며,

셋째, 2004년 3월 발표된 참여 정부의 「공공의료체계 혁신방안」에 대한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넷째, 지방공사 의료원의 효율적인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서 의료원에 대한 관리감독 방식을 개선할 방안은 없는지를 묻습니다.

의료원과 관련하여 한 마디를 더 붙이겠습니다.

영주시민도 경북도민입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도대체 언제까지 영주시민을 의료사각지대에 방치하고 있을 것입니까? 그 근본적인 대책을 간절히 그리고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은 네 번째 주제인 농촌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농도입니다. 굳이 여러 가지 통계수치를 들지 않더라도 이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경상북도는 농촌이 굳건할 때 모두가 굳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촌은 지금 급격한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농정방향은 증산위주의 양적 농정에서 품질위주의 질적 농정으로 크게 선회했고, 농산품 공급위주의 농정에서 식품 소비위주의 농정으로 옮겨가고 있으며, 폐쇄적 국민경제체제에서 개방적 세계경제체제

로 급속히 편입되고 있습니다.

농촌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급격한 고령화 속에 점차 여성화 추이도 보이고 있습니다. 고령화 속의 농촌 노인들은 돌봐줄 자녀도 없이 노인성 질환, 무위, 고독, 빈곤 등 노인문제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청년 창업농은 찾아보기 어렵고, 농촌 청년 사이에는 동남아 출신 신부감을 구하는 풍조가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 농어촌 학교는 신규입학생 고갈로 폐교압력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청장년 농업인들은 무수한 농민단체 등에 중복가입 된 탓에 각종 단체별 행사에 참여하느라 생각하는 영농, 연구하는 영농을 실천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너무나 재작이 많습니다.

그리고 산재한 부실 영농조합법인은 농민과산을 상징하며, 농협은 아직 농민들로부터 그다지 신뢰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꼭히 필요한 경제사업보다는 손쉬운 신용사업위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농촌 농업 관련 행정조직은 아직 전통적 관념과 인습, 타성에 젖어서 변화 속의 농촌 농업을 제대로 선도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태입니다. 농축산물 유통체계는 비효율의 대명사이고 FTA대책은 향후 적정 수급조절을 미처 염두에 두지 않은 채 졸속 집행되는 감이 있고, 쌀개방정책은 인적, 물적, 제도적 사전 대비책 없이 강행될 조짐입니다.

그러나 우리 농촌에도 분명히 희망은 있습니다. 농촌의 모든 변화추이는 위협요인과 함께 기회요인도 수반하고 있습니다. 농촌의 고령화마저 위기인 동시에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 작목반의 성공사례가 있고, 규모화, 차별화, 정보화의 성공사례도 있습니다. 성공사례의 한가운데는 늘 정예 영농인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맞고 있는 농촌문제는 너무나 광범위하고 다양한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여러 각도에서 오늘의 농촌 문제를 골고루 살펴보고자 하므로, 여러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간단명료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우선 고령화 추세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첫째, 보건복지부가 금년 3월1일 발표한 시니어컴플렉스, 즉 복합노인복지 단지 구상에 대한 우리 도의 대응책을 밝혀 주시고,

둘째, 농어촌 폐교를 해당지역의 노인복지센터로 활용하는 방안,

셋째,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통합운영하여 난방비, 운영비 등을 함께 지원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농업주체 재구성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첫째, 농촌을 이끌어갈 정예영농인력을 실효성 있게 육성할 방안은 있는지,

둘째, 과도히 세분화된 농민단체를 적정하게 통·폐합할 방안은 있는지,
셋째, 영농조합법인의 실태와 문제점, 그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넷째, 여성농업인 비중이 과반이므로 21세기적 지식기반의 농업을 이끌 여성농업인
육성교육방안을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쌀개방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첫째, 미곡수매, 도정, 유통기능을 담당할 RPC 즉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한 시설자금,
수매자금, 운영기법 등 종합적 지원강화방안과,

둘째, 쌀전업농 육성지원대책,

셋째, 벼 대체작목으로 농업현장에서 각광받고 있는 논콩에 대한 장려방안을 밝혀주
시고,

넷째, 최근 각급 지방의회는 학교급식조례를 제정하여 우리 농산물을 학교급식재
료로 우선공급토록 함으로써 우리 농산물의 판로 확보와 학생들의 급식수준 향상을 실
현코자 하고 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지역별 학교급식재료를 일괄구매 공급하는 창구역할을 하는 이른바
학교급식센터를 설립 운영할 필요성과 그 방안에 대하여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농축산물 유통 개선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첫째, 농축산물 유통 개선에는 산지 유통센터, 저온저장고, 품목별 도매시장 확충 등이
필수적입니다. 각각의 확충방안을 밝혀주시고,

둘째, 농협중심으로 계통출하를 유도하는 방안,

셋째, 수입 농축산물 부정유통 방지 대책을 답변주시고,

넷째, 쌀, 과일, 축산물 등의 유통에 있어서 군소 브랜드가 난립되고 있어서 경쟁력
약화 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들 군소 브랜드 난립현상을 해소할 방안이 있는지 답변바
랍니다.

다음은 FTA대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우리 도는 한·칠레 FTA체결의 최대 피해지역이므로 2003년11월 전국최초로 WT
O·FTA농업대책팀을 신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째, WTO·FTA농업대책팀의 그 동안의 대표적인 업무실적을 답변주시고,

둘째, 키낮은 사과원 조성 등 과수 분야에 대한 일시적인 집중지원으로 향후 3년 뒤
사과의 과잉생산이 우려되고, 당장 사과 묘목 값이 앙등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역의 행정구조 개편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첫째, 농촌지역은 급격한 인구감소로 시·군, 읍·면·동, 통·리 로 되어 있는 현행

행정구역은 과감한 통·폐합조치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울릉도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은 4만명이상, 면은 4,000명이상, 리는 150명이상을 인구 하한기준으로 적용하여 행정구역 통·폐합을 단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오늘의 농경환경이 급변한 만큼 도단위든 시군단위든 전통적 농정기구 조직을 과감히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특히 시·군의 경우 농정부서와 농업기술센터를 통합 운영하는 추세가 있는바 이런 점들에 대한 견해, 평가 및 방안을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 교육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첫째, 소규모 농어촌학교는 교육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문제가 허다합니다. 조속히 그 통·폐합을 촉진함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견해에 대한 평가를 요청하며.

둘째, 경북, 특히 북북권 초등학교원 인적 자원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경도대학의 부실을 치유하는 근본대책으로 예천 소재 경도대학을 도립교육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필요성과 타당성, 그리고 가능성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 禹成浩議員 영주시 출신 경제문화위원회 소속 우성호의원입니다.

본의원의 오전에 있었던 도정질문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아주 성의 있게 두두 두루 골고루 전향적인 답변을 주신 것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그 중에 몇 몇 부분에 대해서 다소 미흡한 답변이 있어서 확인 차원에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주제 중에 영주지역 도립의료원 설립타당성 조사결과 보고서에 관한 그 후속대책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고,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몇 가지 더 확인할 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당초에 이 예산은 기획관리실 쪽에서 도비 4,500만원이 책정되어서 그 중에 4,30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지방공사의료원 업무는 기획관리실 소관이므로 기획관리실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禹成浩議員 그러면 그 결론 부분에 두 가지 제언이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현재 경북북부권이 고령화 추세에 있기 때문에 현재 안동의료원을 경북북부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노인장기요양시설로 기능 전환하자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禹成浩議員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禹成浩議員 실장님, 본의원이 질문 요지는요.

○禹成浩議員 노인요양시설이 북부권에 필요하느냐 질문을 드렸는데 다른 답변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禹成浩議員 그러면 연구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신뢰성을 동의를 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禹成浩議員 당초 본의원의 질문 대한 것은 답변이 없는데 노인장기요양시설이 경북 북부권에 필요하느냐에 대해서 말이죠.

○禹成浩議員 답변이 걸도는데 이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경북북부권의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노인장기요양시설이 필요하다고 보고 안동의료원을 그렇게 기능전환하자고 하는 제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른 답변만 자꾸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禹成浩議員 실장님, 그것은 신설할 경우의 이야기이지요.

○禹成浩議員 신설이 아니라 재배치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고서는.

○禹成浩議員 신설 예산을 이야기 하시면 안 되지요.

○禹成浩議員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작년 5월에 연구보고서가 나왔는데 왜 이때까지 아무런 조치도 안 취하고 수수방관을 했습니까?

○禹成浩議員 무슨 조치를 했습니까?

○禹成浩議員 무슨 검토를 하는데 1년 정도가 걸립니까?

○禹成浩議員 내부적으로 검토하기가 벅차니까 외부용역을 준 것이 아닙니까? 왜, 내부적으로 검토를 무엇을 했어요.

○禹成浩議員 이것이 전문가의 의견이 아닙니까?

○禹成浩議員 그러면 도비 4,300만원을 들여서 한 것을 불신하는 것입니까?

○禹成浩議員 무조건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를 해당지역 영주시에라도 한번 보내서 공개적으로 의견을 물어본다든지 하는 절차가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누가 어떻게 검토를 한다는 것입니까 해당지역도 모르게 말이지, 실질적인 검토가 되겠습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냥 이것을 쌓아두고 있을 뿐이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거나 후속조치를 연구한 것이 없었습니다. 무엇이 있었지요?

○禹成浩議員 이 부분 대해서는 필요성과 타당성을 추후에 신속히 검토를 하셔서 가지고 검토기간을 몇 년 갈 필요가 없습니다. 후속대책을 빨리 실효성있게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禹成浩議員 그 다음에 농정국장님의 답변이 필요합니다.

○禹成浩議員 국장님, 조금 전에 답변에서 영농조합 법인의 실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487개의 영농조합 법인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언제의 기준입니까?

○禹成浩議員 그러면 이것을 정기적으로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 실태가 파악이 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까?

○禹成浩議員 본의원이 알기로는 농업 농촌기본법이 제정 발효된 이후로는 해당 등기소에만 등기가 될 뿐이지 행정관서에 영농조합법인을 등록하는 절차는 없는 것으로 하는데 지금 어떻게 등록을 했다고 합니까?

○禹成浩議員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본의원이 농업현장을 다녀본 느낌으로는 쌀 개방대책과 관련해서 논콩을 장려하는 것은 상당히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논콩 가격을 유지해 줄 것이냐 하는 민음의 부분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콩 1kg당 4,700원 정도로 그렇게 가격을 책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이 가격은 언제까지 유지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물가변동 지수에 따라서 상승조정이 될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禹成浩議員 가격지지에 대한 전망은 지금으로서는 선불리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네요.

○禹成浩議員 논콩의 경우에는 탈곡기가 마땅치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논콩재배단지 별로 수작업으로 하는 탈곡과정을 탈곡기를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禹成浩議員 그 다음에 우리 도에서는 RPC에 대해서 쌀 농정과 관련해서 많은 지원을 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일선에 있는 단위조합으로서 이 RPC 예산지원과 관련해서 자비 부담률이 높아서 그 부분을 조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반응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비부담 비율을 현실정에 맞도록 적절히 조정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FTA 대책과 관련해서 사과원을 우량묘목으로 전환시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에서는 3~4년 이후에 사과의 공급과잉을 별로 우려 할 필요가 없다고 답변이 나왔지만 본의원이 사과재배 지역을 죽 다녀본 소감으로는 하나같이 작년 재작년 계속 사과 값이 좋았기 때문에 지금 사과 묘목 값이 양등하고 있는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향후의 사과공급 과잉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서면상으로 안이하게 대처를 하지 마시고 현장을 좀더 확인을 하신 다음에 그 대책을 강구하셔야지 사과재배 농가의 이익이 확보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李鎬根議員

○李鎬根議員 예. 본의원이 안 그래도 지사님한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더니만 자리를 피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기초자치단체 243개 단체에 우리 경북지사님이 1등을 하는 지역, 영양군 출신 이호근의원입니다. 우리 지사님이 기초자치단체 1등을 하는, 돌아서면 1등이고 앞으로 가면 제일 오지 제일 낙후된 지역의 출신 이호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규삼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답변을 위해 출석하신 이의근 지사님과 도승희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은 제197회 임시회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된데 대해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나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지역사정을 고려할 때 도민대표의 한 사람으로 막중한 사명감이 먼저 앞섭니다.

따라서 답변을 위해 출석하신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본의원의 질문이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제안으로 깊이 이해하시고 질문에 대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 있는 답변을 하기 바랍니다.

먼저 도청소관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독도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일본 군국주의가 되살아나는 것 같아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 참으로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통탄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일본의도에 말려들지 말고 지혜롭게 현명하게 또 논리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독도와 관련이 있는 어업협정에서 중간수역으로 되어 있는 것부터 재검토되어야 하고 또 동해를 일본해라고 주장하는 것도 슬기롭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은 국제적으로 대처하는 방안과 일본정부를 상대로 하는 정책대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중앙정부차원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으로 구별되어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인들은 국제법적근거를 통해 자국의 주장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있는데 우리는 예나 지금이나 세종실록지리지 50페이지 셋째 줄 독도는 우리 땅만 외치고 있다면 마치 이불속에서 만세를 부르는 격이며 훗날 국제사회가 혼란기에 접어들었을 때 독도를 지키기가 힘들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두 분의 국제법학자가 사비를 털어 자발적으로 독도문제를 연구하고 있는 반면에 일본에서는 국가적으로 해마다 수억원의 연구비를 지원하면서 독도연구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이 지속적으로, 왜놈들이 왜 그러한 주장을 하는지를 도민들에게 정확히 알려주고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대응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고 좀 더 당당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까지 독도문제와 관련하여 이의근 지사께서 조치한 내용과 그 결과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중앙정부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알고자 합니다. 향후 중앙정부나 경상북도가 취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이고, 어떤 외교적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도 지사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본 시마네현에서 독도관련 조례안을 통과시키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알려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도 함께 밝혀주시고, 독도와 관련하여 일본정부의 주장은 무엇이고 우리가 대응하는 전략은 무엇인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국내외적 홍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실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낙동강주변지역의 문제점과 임하호 탁수와 관련한 피해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0년6월23일 낙동강수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깨끗한 물을 공급한다는 취지 하에 낙동강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 의결하고 이듬해인 2001년1월14일 동법을 제정 공포하였으며, 동년 7월29일 환경부령 제123호로 동법시행규칙이 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특별법은 낙동강의 수질보존 및 관리라는 명분 하에 수변구역지정, 오염총량제실시 등 상류지역주민들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문제점과 논란을 일으켜 왔던 것 또한 엄연한 사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미 경북 북부지역에는 국가적 물관리차원에서 지난 '76년과 '92년 안동댐과 임하댐이 각각 준공됨에 따라 1,660ha나 되는 막대한 농경지가 수몰되고 연 200시간이 넘는 일조시간이 단축, 댐 건설 이전에는 연평균 38일이었던 안개일 수가 연 58일로 증가 등으로 지역주민의 생활, 건강상의 피해 및 농작물생육 지장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182.65km²에 달하는 방대한 자연환경보존지역 지정으로 사유재산권이 침해되어

왔으며 개발규제로 인한 낙후된 낙동강 상류지역의 주민들은 국가정책이라는 일방적 규제 속에서 항상 피해만 당해 왔던 것입니다. 국가정책개발로 인한 사유재산권은 충분한 보상과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께서 지금 북부권 안동댐과 임하댐으로 인한 피해대책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소신을 밝혀주시고 본의원이 판단하기에 낙동강 특별법에 의한 영양, 청송, 안동 등 상류지역 주민의 피해가 막대할 뿐 아니라 낙후된 경북 북부지역을 더욱 낙후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하여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수립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동법시행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로 지역주민 피해보상실적 내역, 그리고 향후 보상대책도 함께 밝혀주시고, 이 보상규정이 현실에 맞다고 보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하호의 탁수로 인한 피해현황은 신문지상이나 언론보도에 의하면 탁수피해대책이 시급함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1월24일 정부 정책조정회의 시 임하호 탁수대책으로 영양, 청송, 안동을 사업지역으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단기대책으로 852억원, 2006년도부터 2015년까지 장기대책으로 1,479억원 등, 사업기간은 10년에 걸쳐 총예산 2,331억원을 투입하여 지역내 기반정비, 고령지 받정비, 소하천정비, 사방댐 건설, 농업용 저수지건설, 용상취수장 이전 등을 사업내용으로 탁도개선 추진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이와 같은 임하호 탁수피해대책은 수물민에 대한 생계를 비롯한 각종 피해보상책 미흡, 예산확보방안의 구체성 미흡 등으로 탁상행정에 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또 임하호 탁수피해의 장기적 대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도차원에서 대책위원회라도 만들어서 중앙정부와 주민 간의 불편해소를 강구하고 근본적인 탁수원인의 규명과 대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양의 경우 낙동강수변관리 및 임하호 탁수대책으로 연면적 2,783km²에 걸쳐 2003년도에는 15억원 투입, 2004년도에 12억원을 투입한 바 있고 금년 2005년도는 9억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책정예산으로는 계획하고 있는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늘려서 주민불만을 해소시킬 방법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시외버스노선조정문제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현재 도내의 시외직행버스운행현황을 보면 14개 업체 운행차량, 1,030대 운행노선, 986개 운행노선, 2,735회로 나타나 있으며 경영개선을 위한 시외버스운행노선의 조정현황을 보면 운행노선조정으로 노선폐지가 4개 노선 6회, 노선단축이 4개 노선 20회 단축, 노선 감회가 9개 노선 132회로 45회 감회 미 운행계통 폐지 등 일제정비가 무려 34개 노선 108회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우리 도는 업체의 구조조정과 경영개선을 위한 지원과 함께 시외 직행버스 운행이 곤란한 노선에 대해서는 시내 농어촌버스 노선조정 및 공영버스 운영확대 등으로

주민의 대중교통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의원은 지역주민의 발이라고 할 수 있는 일선 시군 시외버스의 일방적 노선폐지는 주민편의와 의사를 전적으로 무시하고 업체의 사정만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전형적 전시·탁상행정이라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일선 시군의 시외버스 운행의 폐지, 단축, 감회 등 조정이 있을 시 최우선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또 매년 운행노선을 줄이면서 업체에 지원금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도민 앞에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에 도비지원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방자치제도 실시의 근본적 목적은 자치제도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다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는 북부지역이 남·동부지역에 비해 현저히 낙후되어 있으며 재정자립도 역시 대단히 열악한 지역입니다.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발을 맞추어 도내 지역간 균형발전과 열악한 재정여건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부세와 지역의 인구수와 징수실적에 따라 배분하는 지방재정보전금 제도를 지역실정에 따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은데 제도개선 의지는 있는지 밝혀 주시고, 도 보조금 지원 시 재정상태에 따라 차등 지원하여 자치단체간의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가장 적절한 보조금차등지원제도를 차등보조를 위한 객관적 기준지표를 마련하여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데 시행할 의사는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4년도 시군 보조사업 중 도비 3억원 이상 지원사업 내역을 보면 총 121개 사업에 1조1,340억6,600만원으로 이 중 도비지원은 2,021억1,200만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재정자립도가 넉넉한 시군은 많이 가져가고 빈약한 시군은 적게 투자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조금 지원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반드시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재래시장 5일장 육성사업,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영유아자녀양육비 지원사업,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등 주민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된 몇몇 분야에서 상대적 낙후지역인 북부지역이 아예 소외되고 있거나 또는 특정 시군 지역에 편중되었으며, 또한 보조비율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은 상대적으로 높은 시군비 부담 때문에 사업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정인 바 도 차원에서 부담비율을 조정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소관으로 공교육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교육감에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현실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대단히 어려운 위기 국면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국가 백년지대계인 교육분야의 난맥상은 어디서 그

해법을 찾아야 옳을지 방향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최근의 대학수능시험과 교육부총리 임명 파동, 현직 고교교사의 학생 답안지 대리 작성, 교구 납품 비리, 파행 인사 등 교육계의 불법, 비리를 보면 국가경쟁력의 기반인 교육경쟁력이 날로 상실하고 있어 학교교육 주체의 환골탈태와 대오각성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사교육의 비대로 인한 공교육의 붕괴가 현실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 속에 최근 교육인적자원부 주최로 제6회 교실수업개선 실천사례연구발표대회에서 경북 교사들이 전체 수상자 103명 중 29명이나 차지하여 경북 교사들의 수업력이 전국 최고를 입증한 점이나 학원 등 사교육기관이 전무한 경북의 산골 오지학교인 영양여고가 철저한 공교육만으로 2005학년도 대입에서 경북도내 군단위의 수능 최고득점자를 배출했는가 하면 서울대 3명을 비롯하여 전교생 100명 중 85명이 4년제 대학에 진학하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기록하여 공교육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붕괴된 공교육의 위상 재정립을 위해 이와 같이 우수한 실력을 갖춘 교사들에 대하여 인사상의 인센티브 제공은 물론 재정지원도 아울러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데 즉각 수용할 의사는 있으신지, 만약 있다면 그 구체적 시행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양여고의 경우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 이런 성과로 도교육청 차원에서 전폭적 지원은 물론 2008학년도부터 시행 예정인 대학신입생 내신성적 위주의 대입제도와 연계하여 새로운 공교육의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고, 아울러 도내 여타 학교들이 영양여고의 학교 운영방식을 벤치마킹하여 경북교육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전환의 계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종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金柄軫議員

문경시 출신 기획과학위원회 김병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규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도정 업무에 바쁘신 가운데 도정질문을 위해 답변해 주신 이의근 지사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도승희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와 다릅니다. 사회는 다변화되었고 대중은 개인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자신의 생활과 가치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경제상황, 인간관계, 매체 등 모든 것이 복잡하고 세분화된 시점에서 본의원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여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어제와 다르듯 오늘의 우리는 더욱

새로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도지사님을 비롯한 교육감님,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남보다 앞서 이 새로운 비전을 준비하고 실현해 오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가올 세대에 대한 준비이며 우리 경상북도민들의 행복을 위한 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경북도민을 위해 제시하는 전략적인 비전은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며 나아가야 할 길이며, 본의원과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경상북도민들로부터 받은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순수한 길일 것입니다. 농부가 벼꽃보다 배꽃을 좋아하는 이유는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지 않고 물을 주는 사람에게 열매로 보답하기 때문입니다.

경영학자이자 미래학자인 피터 드러커는 그의 저서 ‘넥스트 소사이어티’에서 다음 세대를 네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농촌의 몰락, 제조업의 쇠퇴, 젊은 인구의 감소, 지식사회의 등장입니다. 또한 ‘다가올 세대의 거대한 폭풍’을 저술한 로렌스 코틀리코프 교수와 언론인 스콧 번즈는 젊은 인구의 감소로 인한 사회복지시스템에 대한 경고로 다가올 세대의 대재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미국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즉시 적용이 가능한 경고로 받아들여서 대책을 시급히 논하여 다음 세대에 우리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대한민국의 엄연한 영토인 독도를 일본의 시마네현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 제정을 계기로 영유권을 주장하려는 그들의 음모를 보면서 우리의 국력이 더욱더 강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국력은 경제력과 인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독도가 우리의 영토라는 자주적이고 확고한 인식을 대내외에 표방할 수 있는 우리 경북도 단위 경축행사를, 3.1절이나 8.15 광복절을 기해서 독도에서 개최할 것을 요구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저출산 대책과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복지시스템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고령화사회및인구대책기본법이 통과되면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가 발족되어 대통령 직속으로 콘트롤 타워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이런 정부의 저출산 대책 외에 우리 경상북도만의 저출산에 대한 중장기적인 전략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복지시스템의 심각한 균열이 예상되는데 그 형태는 2025년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2050년까지를 기준으로 우리 경상북도의 사회복지시스템은 어떻게 나타날 것이라 예상하며 이에 대한 대안과 전략과 결과는 어떠하리라 예측하는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저출산 문제에 대하여 정부는 출산축하금제 도입, 노령연금 대폭 확대, 정년 연령제한 제도 개선, 3자녀 가정 우대정책 등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더불어 우리 경상북도가 시행하고 있는 출산장려금, 자녀보육료 지원, 각 시군별 출산대책 등으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십니까? 앞으로 우리 도는 이에 대한 어떤 준비와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우리 경상북도의 2050년의 인구는 128만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때 60세 이상이 60만명, 60세 미만이 68만명이며, 생산가능 인구는 43만명에 불과합니다. 43만명이 60만명의 노인들을 부양할 수 있겠습니까? 또 128만명의 인구로 경상북도가 존재할 수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고 고령화 속도는 가장 빠릅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문제를 그다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노후생활에 대해서도 그저 막연하게 낙관할 뿐 정부에서 약속하는 연금을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지금 이대로 미래사회 연금시스템이 진행된다면 국민연금은 날린 돈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연금은 2036년이면 적자로 돌아서고 2047년이면 고갈됩니다. 정부는 2006년 퇴직연금 도입을 약속했지만 그 실효성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젊은 사람 3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이 되면 젊은 사람 1.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게 될 것입니다.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25%를 넘어설 것이며 2050년이 되면 60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45%에 육박할 것입니다. 본의원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2050년2월13일을 본의원이 세상을 떠나는 날로 정해놓았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60세 미만 인구는 전체 인구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먹여 살릴 아이들, 손자들의 등이 휘어질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우리나라는 2019년이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되면서 인구는 감소세로 접어들게 됩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화 사회로 넘어가는데 미국은 86년, 프랑스는 150년, 이탈리아는 74년이 걸리는 반면 우리나라는 26년에 불과합니다. 이런 고령화 문제는 연금뿐만이 아니라 의료보험의 미래도 암울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인구학적 대변동은 어찌면 우리에게 대재앙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1983년에 2.08명이던 것이 현재는 1.19명입니다. 지난해 우리 도의 출생산아 수는 2만5,233명으로 1995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면 사망자수는 2,161명, 혼인은 1만4,240명, 이혼은 7,768명입니다.

전 세계 평균 출산율 2.69명은 말할 것도 없고, 현재의 인구 대체 출산율 2.1명보다 밑도는 비율입니다. 미국 등 선진국의 출산율은 평균 1.56명, 독일은 1.4명, 일본은 1.29명입니다. 개발도상국은 2.92명, 저개발국은 5.13명입니다.

이처럼 낮은 출산율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2050년에는 대한민국의 인구는 2,900만명 수준이 될 것이며, 우리 경상북도의 인구는 지금의 280만명에서 128만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2050년 경상북도의 인구가 128만명으로 60세 미만이 68만명, 60세 이상이 60만명이 됩니다. 자랑스러운 옹도경북의 300만 도민이 128만명으로 줄어들었을 때 과연 옹도

경북이라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을지가 의심스럽습니다.

뿐만 아니라 60세 미만의 68만명 중 43만명이 60만명을 부양할 수밖에 없는 암울한 미래를 예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상북도의 미래를 위한 설계에 대해 2030년, 2050년의 경북의 현황을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경상북도가 케이블텔레비전에 채널사용사업자로서 “경북채널”을 확보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하며 질문하겠습니다.

케이블텔레비전이 채널사용사업자로서 경북채널을 확보하여 운영함으로써 경북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경북의 경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을 추진할 의향은 있는지 묻습니다.

다음으로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나 외국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서 그 실태 및 성과, 추진사항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케이블텔레비전의 방송채널사용사업은 방송법 제9조5항에 명시된 사항으로 방송위원회에 등록하여 개설할 수 있으며, 등록요건은 자본금 5억원이상으로 조정 및 편집실, 송출시설 등을 갖추면 완비됩니다.

케이블텔레비전에 “경북채널”을 운영하면 경북은 한 단계 성숙한 광역자치단체로 급부상 할 것을 본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경북채널”을 이용하면 경북의 유명관광지, 문화유적, 민간 투자유치, 재래시장 소개, 경북소식 등 경북인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북에서 생산되는 실라리안, 산업용품, 농산물, 해산물, 임산물 등 “경북채널”의 홈쇼핑을 이용하면 획기적인 매출을 올릴 수 있으며 경북채널의 운영비는 물론 경북 경제에 크나큰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케이블과 인공위성을 통해서 전국은 물론 일본, 중국 등에 이르기까지 방송영역을 넓힐 수 있으며, 광역지방자치단체로서는 시급히 유리한 방송채널을 확보해야만 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부에서 지역 공중과 방송과의 경쟁관계를 우려하는 분위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쟁관계가 아닌 협력관계로서 상생의 역할로 승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케이블 텔레비전의 “경북채널”은 광고를 할 필요도 없으며 광고주들이 의뢰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또 KBS, MBC, TBC 등 로컬프로그램들을 유료로 구입해서 “경북채널”에 방송하면 제작자들의 정성이 담긴 프로그램들을 전국에 있는 시청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고 각 지역방송국이 로컬프로그램들의 제작비율은 더 높아질 것입니다.

또 각 공중파방송이나 케이블채널에 경북권 관련 프로그램들을 “경북채널”에 재방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북에 투자가 유치되고 생산품들의 판매가 올라가고 유능한 인력이 모이면 경제는 자연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때문에 기존의 공중파방송은 지금보다 더 많은 광고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경북채널”의 운영에 대한 준비와 검토를 철저하고 신중하게 파악하여 빠른 시일 내에 지사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경상북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중고 생활용품을 재활용하고 생활폐기물을 줄일 수 있으며 아껴 쓸 줄 아는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가치 “경상북도 물물교환 장터”의 개설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하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지금 “경상북도 물물교환 장터”에 대한 견해를 묻고자 하는 것은 원래 본의원의 출신지인 문경시에서 2002년도에 개인적으로 약 5만평 규모의 “물물교환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여 오던 중 도의원에 당선되어 공인의 신분으로 공공에 가까운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판단 하에 경상북도에 제안하는 것입니다.

“경상북도 물물교환 장터” 사업은 누군가 반드시 행하여야 하는 사업이며 성공을 확신할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또한 이 장터로 인하여 인구유입효과는 물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 주는 계기뿐만 아니라 연관된 업종들이 줄줄이 들어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에 헌신하고 자원을 재생산하고 자연환경을 살릴 수 있는 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각 시·군에서 일상적인 중고품을 수리하여 판매하는 재활용센터나 고물상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정부나 우리 경상북도에서 지원하여 보람과 긍지를 심어주고 격려해 줌으로써 이 분들이 직·간접적으로 국가와 인류의 자원과 환경을 보호하는데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를 인정해 줘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 도의 계획이나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각 시·군에서 일상적으로 중고품을 수리하여 판매하는 재활용센터나 고물상들은 비록 영세하게 삶을 영위하지만 이들을 이용하는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 중고품이므로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재활용되지 않으면 쓰레기로 버려질 물건들인데 산업 및 생활 쓰레기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절약하는 습관과 함께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는 아나바다를 실행함으로써 우리들의 정신문화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엄청난 쓰레기 처리비용이 지출되는데 반하여 이들은 자원을 재생산하기 때문에 국가에 기여하는 진정한 애국자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격려하는 것이 자원의 재생산과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경상북도가 광역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전국에서 중고 생활용품을 재활용하고, 생활폐기물을 줄이며 아껴 쓸 줄 아는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가칭 “경상북도 물물교환 장터”를 개설하여 운영할 방안이나 계획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경상북도 물물교환 장터”를 개설하자면 약10만평이상의 부지에 장터를 개설하여 일부는 분양하고 일부는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가능하면 대한민국의 중심부에 위치하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주변의 모든 아이템들이 총괄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동차류, 생활용품류, 전자제품류, 피복 종류, 사무집기류, 가구류, 식당주방기구류, 민속품류, 골동품, 산업자재류, 서적, 기호품류 등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을 다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장터의 형태는 아이템별로 구역을 정하되 자율시장, 경매시장, 야외시장, 교환시장, 점포시장, 품질평가시장, 보관장터 등으로 구분한 형태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템에 따라서는 전문가가 품질평가표를 작성하거나 권고가격을 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장터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당연히 수수료가 부과되어야 합니다. 종류에 따라서 거래수수료, 장터이용수수료, 품질평가 수수료, 권고가격 수수료, 경매수수료, 임대료 등 무료에서부터 유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과수수료 수입으로 운영 유지비가 되어야 합니다.

장터를 운영하면 전국에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이 사람들로 인하여 거래뿐만이 아니라 관련산업이 수없이 늘어날 것입니다. 자동차로 인한 관련산업은 정비업소, 액세서리 취급업소, 중고자동차무역업자, 주유소는 물론 폐차장, 고물상, 자동차전시장, 신차판매업소까지 모여들 것입니다. 또한 자동차경매시장은 자연적으로 탄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물물교환장터에 가면 자동차 관련 모든 것이 해결된다면 충분할 것입니다. 장터로 인하여 적어도 3,000명에서 5,000명 정도의 인구유입 효과는 물론 지방세 세수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며, 지역연계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경상북도 물물교환장터에 대해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자동차시장입니다. 지금 중고자동차 한 대를 사려면 중고자동차매매상사를 찾아가서

물건을 보고 가격을 물어보고 깎으려고 시도를 해 보고 서로가 흥정이 되면 사게 됩니다. 팔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인터넷을 이용하여 경매를 통해서 구입하거나 팔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믿을 수 있는 곳에서, 더 많은 종류의 중고자동차가 있는 곳에서 더 좋은 차를 더 싸게 사는 데에 관심이 있습니다. 자동차의 질적 평가도 진실되고 공정하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와는 거리가 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물물교환장터는 전국에 있는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킬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동차시장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자율시장, 또 하나는 매매시장, 또 하나는 경매시장입니다. 매매상사, 시장은 지금 그대로 매매상사를 통해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자율시장은 자동차를 사거나 팔고 싶으면 재래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 듯이 현장에서 직접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시장에 거래하는 자동차는 전문가들로부터 물건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가치를 부여받아 권고가격을 평가자가 부착해 주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물론 소정의 평가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 거래가 이루어지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장터에서의 거래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런 자동차시장에 전국에 있는 자동차가 모여들다보면 경매시장은 자연발생적으로 변창할 것이며, 관련산업의 성장은 물론 하나의 아나바다 문화의 공간으로도 자리매김이 가능하리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질문은 경상북도의 각 시군별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대책을 묻고자 했습니다. 마는. 동료의원께서 유사한 질문을 하였기에 촉구로 같음하겠습니다.

경상북도의 23개 시군 기초자치단체에 도 산하 기관이나 사업소의 배치 현황을 보면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도록 많은 곳은 소방서를 제외하고 8개소이나, 상대적으로 하나도 없는 시군이 8개 시군이나 됩니다. 앞으로 대구시에 소재해 있는 사업소나 기관을 문경, 청송, 고령, 군위, 울릉 등 도산하 사업소나 기관이 없는 시군에 이전하여 경상북도의 각 시군이 균형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지사님의 역할을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Ⅷ. 5분 자유발언 및 신상발언

제197회(임시회)

2005년 3월 25일(금)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 金正基議員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김천 제1지구 한나라당 소속 김정기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이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지난해 12월7일 제193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본의원과 동료의원 16명이 발의한 경북·대구통합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 운영위원회 심의 의결과정에 대한 본의원의 소회를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2002년 제7대 경북도의회가 출범한 이후 여러 의원님들은 이 자리에서 경북·대구의 통합 필요성과 당위성을 역설하고 이의근 지사에게 통합 추진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지난 제5대 도의회가 청사 이전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한 의회의 요구는 구심점 없는 도정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 때문이라고 사료됩니다. 경상북도의 행정은 오랜 기간 여론의 무풍지대에서 이루어졌고 지금도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기인하여 의회는 도민여론의 구심력을 얻기 위해서라도 도청을 이전하든지 아니면 대구와 통합을 추진하라는 치유책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도지사에게 통합에 대한 견해와 의지를 타진해 왔습니다. 도지사는 7대 의회 초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시기의 성숙을 강조하는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나 2004년부터는 통합의 당위성을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시기의 적정성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과 16명의 의원들이 의회가 통합 추진에 앞장서야 한다는 중지를 모아 2004년9월1일 결의안을 발의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발의한 의원 모두가 지금이 적절한 시기라고 한결같이 입을 모은 것은 국회가 2006년 지방 선거 전에 법령의 정비를 끝낼 수 있도록 하고 내년 지방선거는 통합 경북으로 하고자 하는 대의적 차원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절차상 촉박한 시간과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더 이상 늦출 수가 없다는 다수의 의견이 조율되어 결의안이 발의된 것입니다.

그런데 발의된 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유도 없이 3개월간 심의하지 않고 미루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12월7일 운영위원회 참석위원 9명 중 7명의 위원이 반대

하고 2명은 찬성하여 부결 처리되었습니다.

집행부가 제안한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의원 17명의 발의로 이루어진 결의안을 소수의원 7명이 부결한 것입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다수결 원칙에도 벗어날 뿐만 아니라 다수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의지를 꺾는 소수 의원의 부당한 처사라 간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의안이 발의되기 전에는 많은 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경북과 대구를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또한 청사를 이전하지 않는다고 집행부를 질책하고 의회의 의사를 수용하도록 끊임없이 요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막상 도지사가 의회의 이런 요구에 긍정적인 의지를 표명하자 오히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결의안을 부결시킨 것입니다.

운영위원회가 결의안을 부결시킨 지 3개월이 지난 최근까지 본의원은 어떤 이유에 근거하여 이 안이 부결되었는지 자세한 정황을 알지 못하다가 며칠 전 의장실에서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는 실망스럽기가 이를 데 없었습니다. 또한 같이 발의한 의원님들께도 면목이 없게 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 심의 당시 본의원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참석 위원 누구도 제안설명자인 본의원에게 결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정회를 선언하고 동료 의원 김순건의원님께서 본의원에게 자리를 좀 피해 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오늘 알아보니 운영위원회에서 의견을 그렇게 모았는데 김순건의원께서 대표적으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당혹스럽기가 그지 없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격식과 절차를 중시하는 의회에서 어떻게 이런 의사진행을 할 수 있는지 지금도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경북·대구통합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본의원의 개인적 사익이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안건이 아니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 아닙니까?

본의원은 도의회는 초선이지만 김천시의회 의원 활동을 포함해서 14년간을 지방자치법에 따른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의안을 발의하고 제안설명을 한 의원을 제척시키고 토론 의결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의사진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회 중 의견을 조정하여 참석위원 9명 중 7명이 반대하여 결의안을 부결시킨 것입니다. 결의안을 공동발의한 정무웅의원님과 정상진의원님, 한혜련의원님도 그 회의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오직 한혜련의원만이 심의를 유보하자고 주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안을 공동발의하고도 뚜렷한 이유 없이 부결시키는 이런 이중적인 무책임한 일을 접한 본의원은 쓸쓸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 얼마 남지 않은 임기지만 의원 상호간의 신뢰가 존속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집행부를 철저히 견제하고 의정활동을 펼칠지 참으로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의원의 경험과 의정의 통상적인 차원으로 해석한다면 운영위원회는 의원의 발의안

건에 대하여는 위법성 여부만을 검토하고, 즉 상위개념의 법률적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다면 본회의에 회부하거나 아니면 의장의 재량에 맡기는 것이 타당한 것이라고 여겨 집니다. 더욱이 국회처럼 정당이나 정파에 의하여 제출된 안건도 아닌 것인데 다수가 발의한 것을 소수가 부결시켰다면 위법성과 명목상의 이유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본 의원은 아직도 부결시킨 진정한 이유를 공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기가 아니 다라고 하는 것과 대구시는 가만있는데 우리가 뭐 답답해서 통합을 서두르느냐는 말이 있었다는데 본의원이나 양식이 계신 분들은 그 말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우리 의회가 주도하여 경북과 대구의 지역 최대 현안을 풀어나가자는 것인데 왜 대구가 주장하면 뒤따라가려는지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의회가 통합을 촉구할 때는 도지사가 시기문제를 거론하고 다시 도지사가 시기의 적절함을 표명하자 오히려 의회가 시기의 부적절함을 제기하는 줄다리기식 힘겨루기로밖에 해석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모순과 역적이 의회의 구조적 잘못인지 아니면 운영위원회의 의사진행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한번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장님께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본회의에 안건을 회부하여 전체 의원의 의견을 조율하고 가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합니다.

통합문제는 시간이 더욱 촉박합니다. 만약 본회의에서도 결의안이 부결된다면 통합의 의사가 없는 것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도청이전특위를 구성하여 도청 이전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의회가 있으면서 언제까지 도민의 세금을 거두어서 살림살이가 다른 대구에다 퍼붓고 여론 없는 껌데기 도정을 계속 하도록 방치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통합이나 도청이전이나 일련의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의회가 그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7대 의회는 경북·대구 통합과 도청이전이라는 우리 도의 시대적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요구되지만 일반 도민들에게는 무성한 전시성 발언만 난무하고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임기를 마치게 되는 의회로 비취질까 의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염려가 됩니다.

끝으로 동료의원 여러분의 경북·대구 통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權鍾淵議員

안동 출신 기획과학위원회 권종연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의원의 발언주제부터 말씀드리면, 참여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에 대한 우리 도의 추진전략입니다.

참여정부는 21C 지방화 시대에 적합한 분권형 선진국가 건설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을 최대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지방중심의 분권과 분산 체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실행정수도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 건설 등을 패키지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간 우리 도는 공공기관의 경북지역 유치를 위해 2004년5월에는 36개 중점유치기관에 대해 공공기관 지방이전 의견수렴 조사표를 건교부 공공기관지방이전지원단에 제출한 바 있고, 지난 2월1일에는 유치기관의 중복을 피하고 지역에 적합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대구·경북 공동 공공기관 유치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켜 현재 대구시와의 공동 유치전략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공공기관 지방이전 확정을 5월말에 공표하기로 하는 등 공공기관 유치속도가 수도권과 행정도시가 들어설 충남, 정부대전청사가 소재하고 있는 대전을 제외한 11개 시·도에 건설될 혁신도시와 함께 매우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자본과 규모면에서 거대 공공기관인 한국전력과 가스공사가 호남지역, 토지공사는 부산지역, 주택공사는 충청지역으로 내정되었다는 등 공공기관의 특정 지역 사전 내정설이 광범위하게 나돌고 있어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정치논리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의혹이 세간에 증폭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경북은 경주 태권도 공원 유치 무산, 영남권 축구센터 유치 무산, 포항~울진 간 7번 국도 확포장 공사의 지연 등 서해안 개발과 비교하면 철저히 소외되어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있다는 괴리감에 도민들의 불만은 그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도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개발사업비의 시·도별 배분액을 살펴보면, 우리 경북은 4,509억원으로 경쟁 도보다 훨씬 적어 국가 균형발전은 고사하고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은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관점에서 10개 시·도에 한국전력, 주택공사, 토지공사,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 거대 공공기관을 1개씩 배치한다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이전계획안은 시·도별 나눠먹기식 배분에 불과하므로 절대 반대하며 아울러 전국에서 면적에 있어서 가장 넓은 반면 낙후지역이 가장 많은 경북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파급효과가 큰 한국전력, 도로공사, 주택공사 등 양질의 기관이 유치되어야 된다고 보고 혁신도시 또한 추가적으로 건설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면서 향후 도 차원의 추진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금년 5월에는 반드시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계획을 공표하겠다고 한만큼 오는 4월 한 달간을 공공기관 유치 집종의 달로 선정하고 부지사를 책임으로 하는 유치목표 달성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막연한 로비 차원에서 벗어나 선택과 집중에 근거하여 예측 가능한 유치전략을 추진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구미의 경우 정부가 혁신클러스트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식기반신도시에 선정되어 총 1,700억원이 투자되어 사업이 마무리된다면 명실상부한 디지털 첨

단산업도시화로 변모할 것이며, NT·IT산업의 중심지 포항 역시 기업도시로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나, BT·CT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북부지역은 사업기간이 장기간일 뿐만 아니라 민자유치가 전무하여 사업추진이 지극히 미진한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북부 중심지역은 우리 도의 56.7%나 차지하고 있는 광대한 면적을 가지고 있으나 경제적 측면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열악하고 인구 또한 해마다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어 지역의 발전상황이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모 방송국에서 남북한 경제력 비교를 위해 야간 인공위성으로 촬영한 한반도 사진에서도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휴전선을 경계로 남한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불빛이 환한 반면, 북한은 칠흑 같은 어둠에 쌓여 있어 남북한 간의 경제력 격차를 실감할 수 있으나 불행히도 한반도 남한지역의 경북 북부지역과 강원 동부지역만은 북한과 별반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은 이 지역의 낙후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단적으로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지역간 균형발전의 도모는 분권시대에 있어서 민선자치단체장의 가장 기본적 임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지사님께서서는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시고 경북 북부지역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다수의 공공기관 유치와 지난 2일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청와대 방문 시 건의하신 경북지역의 혁신도시 추가건설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지사께서 우리 도에 가장 효율적인 공공기관 유치와 2개의 혁신도시 선정을 위해 방송을 통한 TV 공개토론회 개최를 요구하여 전국 시·도지사와 상호 토론함으로써 경북의 지역특성과 타시·도에 대한 비교우위성, 유치객관성, 합리성, 타당성 등을 소신 있게 개진하여 반드시 우리 도가 추진하는 공공기관의 유치목표를 달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197회(임시회)

2005년 3월 25일(금) 제3차 본회의 신상발언

□ 金成河議員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님 여러분. 300만 도민과 도정의 발전을 위해서 단 1초도 아껴야 하고 잘 활용해야 할 의정단상에 제 개인의 신상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7대 경상북도의회 의원으로 마지막 발언대에 섰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저는 지난 2002년도 6월 지방선거에서 소위 공천현금 사건과 관련해서 대법원에 아직 계류 중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제가 깨끗하고 젊은 정치를 지향했던 제 개인에 대한 부끄러움과 자괴감 때문이고, 그 두 번째는 그 자괴감을 조금이라도 씻을 수 있는 길은 제 처신을 좀더 명확케 하고 또 제 자리를 다시 시민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전 오늘 이 자리에서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제 사퇴의 변일까 밤새 고민했습니다. 마는 사실 지금 머리는 그냥 하얗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달리 없습니다. 2년 7~8개월 여러 선배님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저에게 보내주신 따뜻한 성원과 사랑 그 모든 것을 제 가슴에 안고 떠나겠습니다.

언젠가 다시 저에게 다시 정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의와 사랑, 항상 올바르게 항상 정의로울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도록 더 수양하고 닦고 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신 여러 선배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이의근지사님과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조 례 안 : 9건】

- 경상북도과학기술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경상북도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경상북도 지역정보화추진 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경상북도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울릉군민여객선운임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동북아시아지역 자치단체연합사무국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안

경상북도과학기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철 우

2005. 3. 25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과학기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과학기술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 제3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3항”을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제6조”로 한다.

제5조제3항중 “경제통상실장”을 “과학기술진흥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산업관광위원회 위원 1인”을 “과학기술진흥업무 소관위원회 위원 1인”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생략) ② 제1항의 시행계획은 <u>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 제3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3항</u> 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으로 본다 ③ (생략) ④ (생략)	제2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 <u>과학기술기본법 제7조 ·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 제6조</u> ----- -----.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5조(협의회회의 구성) ①~② (생략)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경상북도 기획관리실장, <u>경제통상실장</u> 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u>산업관광위원회 위원 1인</u> 과 지역과학기술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 (생략)	제5조 (협의회회의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u>과학기술진흥업무 담당국장</u> ----- -- <u>과학기술진흥업무 소관위원회 위원1인</u> ----- ----- -----. ④ (현행과 같음)

경상북도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철 우

2005. 3. 25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 제1항·제2항, 제6조 제1항·제2항, 제18조 제1항·제2항, 제19조 중 “정보통신담당관”을 각각 “정보화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인터넷시스템 개선)	<u>정보통신담당관</u> 은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인터넷시스템 개선)	<u>정보화업무 담당과장</u> 은 -----	-----
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u>정보통신담당관</u> 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 관리하여야 한다. ② <u>정보통신담당관</u> 및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장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 제공 시 정보 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u>정보화업무 담당과장</u> 은 ----- ----- ----- ② <u>정보화업무 담당과장</u> 및 ----- ----- ----- ----- -----	-----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u>정보통신담당관</u> 은 홈페이지 게시 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u>정보통신담당관</u> 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필요시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할 수 있다. 1~9 (생략)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u>정보화업무 담당과장</u> 은 ----- ----- ----- ----- ----- ② <u>정보화업무 담당과장</u> 은 ----- ----- ----- ----- ----- ----- ----- 1~9 (현행과 같음)	-----

현행	개정안
제18조(시스템의 안전대책)	제18조(시스템의 안전대책)
① <u>정보통신담당관</u> 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u>정보화업무 담당과장</u> 은----- ----- -----.
② <u>정보통신담당관</u> 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매일 변동자료 및 매주 전체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u>정보화업무 담당과장</u> 은 ----- ----- ----- ----- ----- -----.
제19조(비밀번호 관리)	제19조(비밀번호 관리)
<u>정보통신담당관</u> 은 담당자의 비밀번호를 국가정보통신보안 관련규정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u>정보화업무 담당과장</u> 은 ----- ----- ----- -----.

경상북도지역정보화추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철 우

2005. 3. 25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지역정보화추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지역정보화추진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중 “기획관리실장”을 “정보화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중 “정보통신담당관”을 “정보화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①~③ (생략) ④협의회에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도 <u>기획관리실장</u> 이 된다. ⑤~⑥ (생략)	제7조(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①~③ (현행과 같음) ④ ----- 도 <u>정보화업무 담당국장</u> 이 -----. ⑤~⑥ (현행과 같음)
제10조(설치) ①~② (생략) ③경상북도지역정보화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u>정보통신담당관</u> 이 된다.	제10조(설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u>정보화업무 담당과장</u> 이 -----.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철 우
2005. 3. 25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중 환경산림수산분야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란 중
환경관리과란 건명 제32호 가목 내지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환경 관리과	32. 건설폐기물처리업 및 처리시설에 관한 다음 사무 가.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변경허가, 허가의 취소 등 나.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승인 다. 건설폐기물의 재위탁 금지 라. 과징금의 처분 등 마.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변경승인) 및 신고(변경신고) 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완료 및 신고 사.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개선, 사용중지, 폐쇄 명령 등) 아.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자. 권리·의무의 승계 등 차. 휴·폐업 등의 신고 및 보고 검사 등 카. 방치폐기물의 예방조치 등 타. 방치폐기물의 처리 파. 방치폐기물의 처리책임 을 승계한 자에 대한조치 및 처리 이행보증 주체에 대한 조치 등 하. 청문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 한법률 제21조, 제22조,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3호 동법 제23조 동법 제26조,동법시행령 제15조 동법 제27조 동법 제28조 동법 제29조 동법 제30조 제3항 동법 제31조 동법 제33조, 제34조 동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 19조,제20조 동법 제43조 동법 제45조, 제46조 동법 제57조	시장 군수

별표 3 중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란 중 방호구조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방호구조과	1. 소방시설업(소방시설설계업,소방시설공사업,소방공사감리업)에 관한 권한 가. 소방시설업 등록 및 변경 나. 지위승계신고 수리 다.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라. 과징금 처분 마.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교부 및 반납 2.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등록 등에 관한 사항 가.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등록 나. 시험자의 등록신청, 등록증교부 다. 시험자의 등록취소, 공고, 등록증 회수 라. 시험자의 중요사항 변경신고 3. 소방시설관리업에 관한 사항 가.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및 변경 나. 지위승계신고 수리 다.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라. 과징금 처분 마.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교부 및 반납 4. 방염처리업에 관한 사항 가. 방염처리업 등록 및 변경 나. 지위승계신고 수리 다.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라.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교부 및 반납	소방시설공사법제4조및제6조 동법 제7조 동법 제9조 동법 제10조 동법 제4조제3항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6조 제2항 동법 시행령제14조 동법 시행규칙제62조 동법 제16조제3항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29조및제31조 동법 제32조 동법 제34조 동법 제35조 동법 제29조제3항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14조 및 제16조 동법 제17조 동법 제19조 동법 제14조제3항	소방서장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접수된 민원사항은 접수기관이 종전의 규정에 의거 처리하며,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거 처리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환경산림수산분야

현행			개정안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환경 관리과	(신설)		환경 관리과	32.건설폐기물처리업 및 처리시설에 관한 다음 사무		시장 군수
	(신설)			가.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변경허가, 허가의 취소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2조, 제25조	
	(신설)			나.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승인	동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3호,	
	(신설)			다.건설폐기물의 재위탁 금지	동법 제23조	
	(신설)			라. 과징금의 처분 등	동법 제26조 동법시행령 제15조	
	(신설)			마.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변경승인) 및 신고(변경신고)	동법 제27조	
	(신설)			바.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완료 및 신고	동법 제28조	
	(신설)			사.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개선,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	동법 제29조	
	(신설)			아.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동법 제30조 제3항	
	(신설)			자.권리·의무의 승계 등	동법 제31조	
	(신설)			차.휴·폐업 등의 신고 및 보고 검사 등	동법 제33조, 제34조	
	(신설)			카.방치폐기물의 예방조치 등	동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19조, 제20조	
	(신설)			타.방치폐기물의 처리	동법 제43조	
	(신설)			파.방치폐기물의 처리책임 을 승계한 자에 대한 조치 및 처리 이행보증 주체에 대한 조치 등	동법 제45조, 제46조	
	(신설)			하. 청문	동법 제57조	

[별표 3]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현행			개정안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u>방호구조과</u>	1.소방공사설비업에 관한 권한 가.소방설비공사업의 면허 및 면허갱신 나.양도·양수, 합병 신고 수리 다.면허의 취소, 영업정지, 재교부 및 반납 라.상속신고의 수리 마.도급한도액의 고시 등 바.소방설비공사업 면허변경 신고의 수리	소방법 제52조제1항, 제4항, 제5항, 동법시행령 제37조 동법 제55조제1항 동법 제58조 동법 제55조 제3항 동법 제59조, 동법시행령 제38조 동법 제57조, 동법시행령 제64조	<u>방호구조과</u>	1.소방시설업(소방시설설계업,소방시설공사업,소방공사감리업)에 관한 권한 가.소방시설업 등록 및 변경 나.지위승계신고 수리 다.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라.과징금 처분 마.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교부 및 반납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제6조 동법 제7조 동법 제9조 동법 제10조 동법 제4조3항	<u>소방서장</u>
	2.위험물탱크 안전 성능 시험자의 지정등에 관한 사항 가.시험자의 지정 나.시험자의 지정신청, 지정서 교부 다.시험자의 지정취소 등의 공고 라.시험자의 변경지정 등	소방법 제18조제1항,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12조 동법시행규칙 제13조 동법시행규칙 제14조		2.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등록등에관한 사항 가.위험물탱크안전성능 시험자의 등록 나.시험자의 등록신청, 등록증 교부 다.시험자의 등록취소, 공고, 등록증 회수 라.시험자의 중요사항 변경신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6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62조 동법 제16조제3항	

현행			개정안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방호 구조과	3.소방시설점검업에 관한 사항 가.등록 및 변경등록 나.승계신고수리 다.휴업·재개업·폐업 신고수리 라.등록의 취소, 영업 휴지 4.소방용 기계·기구 등의 제조업에 관한 사항 가.허가, 변경허가 나.양도·양수, 합병인가 다.상속신고 수리 라.휴업폐업·재개업 신고 수리 마.허가취소, 영업정지 5.소방시설의 설계업 및 감리업에 관한사항 가. 등록 나.휴업·재개업·폐업 신고 수리 다.양도·양수, 상속 또는 합병인가 라.등록의 취소, 영업 정지, 등록증 재교부 및 반납	소방법 제33조제1항 동법 제35조 동법 제36조 동법 제37조 소방법 제44조제1항 동법 제46조제1항 동법 제46조제2항 동법 제48조 동법 제49조 소방법 제65조의2 동법 제65조의8 동법 제65조의7 동법 제65조의9	방호 구조과	3.소방시설관리업에 관한 사항 가.소방시설관리업 등록 및 변경 나.지위승계신고 수리 다.등록의 취소와 영업 정지 라.과징금 처분 마.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교부 및 반납 4.방염처리업에 관한 사항 가.방염처리업 등록 및 변경 나.지위승계신고 수리 다.등록의 취소와 영업 정지 라.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교부 및 반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1조 동법 제32조 동법 제34조 동법 제35조, 동법 제29조 제3항,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6조 동법 제17조 동법 제19조 동법 제14조 제3항	소방 서장

경상북도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철 우

2005. 3. 25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립공원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경상북도립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의 지정·관리,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도립공원위원회의 설치·운영, 법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점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제2호 내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청소년 : 13세이상 18세이하인 자를 말한다
3. 군 인 : 하사이하의 군인(공익근무요원 포함)과 전투경찰순경을 말한다.
4. 어 른 : 19세이상 64세이하인 자를 말한다

제5조중 “법 제17조제3항”을 “법 제80조제2항”으로 한다.

제8조중 “법 제19조 및 제20조”를 “법 제9조”로 한다.

제9조제3항중 “자치행정국장, 보건환경산림국장, 농수산국장, 경제통상국장, 건설도시국장”을 “경제통상실장, 자치행정국장, 농정국장, 환경산림수산국장, 건설도시재난국장”으로 한다.

제9조제4항제1호중 “시장·군수”를 “부시장·부군수”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의2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감액결정) 시장·군수는 별표 3 및 별표 4에서 정한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고시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 (입장료등의 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빈,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3. 국립·도립공원위원회 위원 및 환경부장관이 위촉 또는 추천한 학술조사자
4. 6세 이하인 자, 65세 이상인 자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장애인등록증상 장애등급이 1급 내지 3급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5.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6.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근로자의 날에 입장하는 근로자 및 석가탄신일에 사찰에 출입하는 자
7. 자연공원협회의 임원
8. 당해 공원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와 당해 공원구역안의 사찰에 상시 출입하는 승려 또는 신도
9.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0.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23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38조에 의한 점용료 및 사용료는 동법시행규칙 제26조에 규정된 요율을 기준으로 하여 징수한다.

“별표3 및 별표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3]

입장요금표

(단위:원)

구 분	어 른	청소년 및 군인	어린이
개 인	1,000	600	300
단 체	800	500	200

[별표 4]

시설사용요금표

1. 주차료

(단위:원)

차 종	당일차량	체류(숙박)	비 고
1. 이륜차	400	800	
2. 승용차			
○ 영업용	1,000	2,000	
○ 비영업용	2,000	4,000	
3. 버 스			
○ 마이크로버스	2,000	4,000	
○ 정기버스	2,000	4,000	
○ 비정기버스	4,000	6,000	
4. 화물차			
○ 4톤미만	2,000	4,000	
○ 4톤이상	2,500	5,000	

2. 영리목적 촬영

가. 사진촬영

(단위 : 원)

시설명칭	구 분	사 용 료	비 고
사진촬영	1 년	600,000	1인 기준

나. 영화, TV드라마, C·F, VTR촬영

(단위 : 원)

시설명칭	구 분	사 용 료		
		오 전	오 후	야 간
영 화, TV 드 라 마, C·F(광고)촬영	1회당	120,000	120,000	180,000
V T R 촬영	1회당	60,000	60,000	60,000

※ 위 각호에서 사용하는 당일, 체류 및 1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오전, 오후, 야간

가. 오전 : 일출시부터 13:00까지

나. 오후 : 13:00시부터 일몰시까지

다. 야간 : 일몰시부터 일출시까지

2. 당일 : 00:00시부터 24:00시까지

3. 체류 : 00:00시부터 익일 12:00시까지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장 총 칙	제1장 총 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경상북도립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의 지정, 법 제17조 및 제 49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의 보호·관리,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도립공원위원회의 설치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점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 조 (목 적) 제 4 조 지정 · 관 리, 법 제 9 조 설치 · 운영, 법 제 37 조 및 제 38 조	제1조(개정안과 같음)
제2조 (생략)	제2조 (현행과 같음)	제2조 (현행과 같음)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제3조 (정의)
1. (생략)	1.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청소년 : 13세이상 18세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고등학생을 말한다.	2. 청소년 : 13세이상 18세이하인 자를 말한다.	2. (개정안과 같음)
3. 군 인 : 하사이하의 군인과 전투경찰순경을 말한다.	3. 군 인 : 하사이하의 군인(공익근무요원포함)과 전투경찰순경을 말한다.	3.(개정안과 같음)
4. 어 른 : 19세이상 64세이하인 자로서	4. 어 른 : 19세이상 64세이하인 자를 말한다.	4. (개정안과 같음)
5. ~ 9. (생략)	5. ~ 9. (현행과 같음)	5. ~ 9. (현행과 같음)
제4조 (생략)	제4조 (현행과 같음)	제4조 (현행과 같음)
제2장 관 리	제2장 관리	제2장 관리
제5조 (공원보호 등의 직무) 도지사는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직무를 도지사 및 당해 공원을 관할하는 시장 · 군수	제5조 법 제 80 조 제 2 항	제5조 (개정안과 같음)

(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여금 행하게 한다. 제6조 ~ 제7조 (생략) 제3장 도립공원위원회 제8조 (설치) 법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 ① ~② (생략) ③ 기획관리실장, 자치행정국장, 보건환경산업국장, 농수산국장, 경제통상국장, 건설도시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력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다음 각호의 자는 특별위원이 된다. 1. 당해 공원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2. (생략) ⑤ (생략) 제10조 ~ 제20조(생략) 제20조의2 (입장료의 감액결정) 시장·군수는 별표3 및 별표 4에서 정한 기준액의 50%범위내에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고시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 (입장료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3. 국립공원위원회 위원 및 도립공원위원회 위원과 건설부장관이 위촉 또는 추천한 학술	 제6조 ~ 제7조 (현행과 같음) 제3장 도립공원위원회 제8조 법 제9조..... 제9조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기획관리실장, 경제통상실장, 자치행정국장, 농정국장, 환경산업수산국장, 건설도시재난국장 ④..... ... 1.부 시장·부군수 2.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 ~ 제20조(현행과 같음) 제20조의2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감액결정) 시장·군수는 별표3 및 별표 4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고시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 (입장료등의 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현행과 같음) 2.(현행과 같음) 3.국립·도립공원위원회 위원 및 환경부장관이 위촉 또는 추천한 학술조사자	제6조 ~ 제7조 (현행과 같음) 제3장 도립공원위원회 제8조 (개정안과 같음) 제9조 ① ~② (현행과 같음) ③(개정안과 같음) ④..... ... 1. (개정안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 ~ 제20조(현행과 같음) 제20조의2 (.....)별표3 및 별표 4에서 정한금액의 50%범위내에서 제21조 (개정안과 같음) 1.(현행과 같음) 2.(현행과 같음) 3.(개정안과 같음)
--	---	--

<u>조사단(자)</u> 4. <u>6세 이하인 어린이와 주민등록증이나 경로우대증을 소지한 노인</u> 5. <u>국가기관에서 정양중인 상이군경</u> 6. <u>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경찰의 날에 입장하는 경찰,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근로자의 날에 입장하는 근로자 및 석가탄신일에 사찰에 출입하는 불교신도</u> 7. <u>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u> <u>②당해 공원구역에 거주하는 자와 당해 공원구역내 사찰에 상시 출입하는 승려 또는 신도에 대하여는 입장료는 면제한다.</u> 제22조 (생략) 제23조 (점용료) ①<u>법 제27조에</u> 의한 점용료 및 사용료는 동법시행규칙 <u>제18조</u> 규정된 요율을 기준으로하여 징수한다. ②~③ (생략) 제24조~제30조 (생략)	4.6세 이하인 자, 65세 이상인자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장애인등록증상 장애등급이 1급 내지 3급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5.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6.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근로자의 날에 입장하는 근로자 및 석가탄신일에 사찰에 출입하는 자 7. 자연공원협회의 임원 8. 당해 공원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와 당해 공원구역 안의 사찰에 상시 출입하는 승려 또는 신도 9.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86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0.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삭제) 제22조 (현행과 같음) 제23조 (점용료) ①<u>법 제38조에</u> <u>제26조</u> ②~③ (현행과 같음) 제24조~제30조 (현행과 같음)	4.(개정안과 같음) 5.(개정안과 같음) 6.(개정안과 같음) 7. (개정안과 같음) 8.(개정안과 같음) 9.(개정안과 같음) 10.(개정안과 같음) ② (삭제) 제22조 (현행과 같음) 제23조(개정안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24조~제30조 (현행과 같음)
--	--	--

[별표 3]

입 장 요 금 표

(단위 : 원)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어 른	청소년 및 군인	어린이	어 른	청소년 및 군인	어린이	어 른	청소년 및 군인	어린이
개 인	800	600	300	<u>1,400</u>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u>1,000</u>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단 체	600	400	200	<u>1,100</u>	<u>500</u>	현행과 같음	<u>800</u>	개정안과 같음	현행과 같음

[별표4]

(현 행)

시 설 사 용 요 금 표

(단위 : 원)

구 분	차 종	당일차량	체류(숙박)	비 고
주차료	1. 이륜차	400	800	
	2. 승용차			
	○ 영업용	1,000	2,000	
	○ 비영업용	2,000	4,000	
	3. 버 스			
	○ 마이크로버스	2,000	4,000	
	○ 정기버스	2,000	4,000	
	○ 비정기버스	4,000	6,000	
	4. 화물차			
	○ 4톤미만	2,000	4,000	
	○ 4톤이상	2,500	5,000	

(개정안)

시 설 사 용 요 금 표

1. 주차료

(단위 : 원)

차 종	당일차량	체류(숙박)	비 고
1. 이륜차	400	800	
2. 승용차			
○ 영업용	1,000	2,000	
○ 비영업용	2,000	4,000	
3. 버 스			
○ 마이크로버스	2,000	4,000	
○ 정기버스	2,000	4,000	
○ 비정기버스	4,000	6,000	
4. 화물차			
○ 4톤미만	2,000	4,000	
○ 4톤이상	2,500	5,000	

2. 영리목적 촬영

가. 사진촬영

(단위 : 원)

시설명칭	구 분	사 용 료	비 고
사진촬영	1 년	600,000	1인 기준

나. 영화, TV드라마, C·F, VTR촬영

(단위 : 원)

시설명칭	구 분	사 용 료		
		오 전	오 후	야 간
영 화, TV 드라마, C·F (광고) 촬영	1회당	120,000	120,000	180,000
V T R 촬영	1회당	60,000	60,000	60,000

--	--	--	--	--

※ 위 각호에서 사용하는 당일, 체류 및 1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오전, 오후, 야간
 - 가. 오전 : 일출시부터 13:00까지
 - 나. 오후 : 13:00시부터 일몰시까지
 - 다. 야간 : 일몰시부터 일출시까지
2. 당일 : 00:00시부터 24:00시까지
3. 체류 : 00:00시부터 익일 12:00시까지

(수정안)

시 설 사 용 요 금 표

1. 주차료(개정안과 같음)
2. 영리목적 촬영(개정안과 같음)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철 우

2005. 3. 25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로 한다.

제30조제4항 [별표3]의 『학생야영장의 명칭 및 위치』란 중 “경상북도성주학생야영장, 경상북도경주학생야영장, 경상북도영주학생야영장, 경상북도예천학생야영장, 경상북도영천학생야영장, 경상북도청송학생야영장, 경상북도구미학생야영장, 경상북도칠곡학생야영장”란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철 우

2005. 3. 25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개정조례안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농어업 육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농어업·농어촌발전을 도모하고자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이라함은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임업 및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라함은 경상북도내 정착하여 농어업에 종사 하는자를 말한다.
3. “농수산물”이라함은 농산물·축산물 및 수산물과 ·임산물을 말한다.
4. “생산자단체”라함은 경상북도내 정착하고 있는 농수산물의 생산자 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단체를 말한다.

가. 농·축·수협 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한 인삼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나.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수산물을 생산하여 이를 공동으로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어민 5인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조직체.

제3조 (기금의 조성) ①농어촌진흥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 및 농·수협외의 출연금
2. 농어촌 투·융자 재원 등 국고지원금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4. 기타 기금운용 수익금

②도지사는 제1항 제1호에 의한 도출연금을 매회계연도마다 일반세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4조 (기금의 차입) 도지사는 기금의 차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지역개발특별회계,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5조 (기금의 운용) 조성된 기금의 여유자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기금관리수탁기관에의 예치
2. 국·공채등 유가증권의 매입
3. 농어촌구조개선관련 민·관 공동출자 사업
4. 기타 도지사가 정하는 방법

제6조 (기금의 관리) ①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경상북도를 관할하는 다음 각호의 1의 자(이하 “기금관리수납기관”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②도지사는 기금의 수납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도금고(이하 “기금관리수납기관”이라 한다)에 기금출납원의 구좌를 설치하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총괄 회계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위탁업무를 취급함에 따른 수수료는 기금운용수익금으로 하되, 수수료지급 대상 업무와 수수료율 및 지급방법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④기금은 도금고에 예치하며, 기금의 용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자업무를 위탁할 경우, 도지사는 그 위탁을 받은 금융기관(이하 “기금관리수탁기관”이라 한다)과 별도 협약에 의하여 위탁사무 취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기금계정의 설치) 기금관리수탁기관은 운용·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 계리하여야 한다.

제8조 (기금사업의 대상)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농어촌 소득증대 사업
2.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특산품 개발사업
3. 농어업시설의 구조개선
4. 신기술개발 지역특화사업 육성지원
5. 농수산물 수출육성 지원사업
6. 농수산물 가공 및 유통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7. 농수산물 직판사업 및 산지 매취사업
8. 1지역 1명품 육성사업
9. 기금의운용, 관리에 필요한 경비지출
10.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기금운용심의회 설치) ①농어촌진흥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사항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

③제1항의 의한 심의회의 기능은 경상북도농정심의회가 대행한다.

제10조 (기금의 운용계획) ①도지사는 매회계연도마다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연도 기금사용계획
3. 사업비의 용자계획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 (회계공무원) ①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중에서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 농정업무담당 국장
2.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부서 담당

②기금출납원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2장 대상자선정 및 사업비 지원

제12조 (용자대상자선정) ①농어촌진흥기금을 용자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1. 농어업인
2. 농어업인단체, 농어업법인, 농어업관련기업체
3. 농수산물수출업체, 농·수협, 특수조합등 제2조 제4항에 해당하는 생산자 단체

③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신청서에 심사의견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추천하고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추천한 자 중에서 용자대상자를 선정한다.

④도지사는 사업의 성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직접 접수하여 용자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13조 (융자 및 상환조건) 제8조제1항의 규정된 융자대상사업에 대한 융자금의 한도, 융자기간, 융자금의 상환이율, 연체이자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융자금의 사용금지) 농어촌진흥기금을 융자받은 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목적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15조 (융자금의 회수) 농어촌진흥기금 관리 수탁기관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환기일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했을 때
2. 농어업인이 농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할 때
3. 농어업인의 경우 경상북도외 지역으로 진출할 때
4.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때
5. 기타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거나 기금회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회수를 결정할 때

제16조 (기금의 배분) 시·군별 사업기금 배분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수탁기관별 위탁관리기금에 의하며, 예치금의배분은 제5조 규정에 의한 당해 기관단체의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실적을 감안하여 심의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17조 (대손충당금 적립) ①기금의 운용시 상환불능기금의 대손에 충당하고자 당해연도 기금운용 수익금의 10%범위내에서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대손결정 및 적립에 관한 사항은 기금관리 수탁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18조 (상환기간의 연장) ①도지사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규정된 기간내 본장에 의한 기금융자금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상환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9조 (연체이자의 감면) ①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도지사는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

②연체이자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20조 (용자의 금지) ①기금을 용자받은 사업자(선정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향후 2년간은 용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15조에 해당되어 일시 상환 등 조치를 받은 경우
2. 용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용자를 포기하였을 경우
3. 용자금 상환을 2년간 연체 중일때

②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불가피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3 장 보 칙

제21조 (사후관리등) 도지사는 기금관리 수탁기관과 기금을 용자받은 자에 대하여 용자업무, 기금운용 및 관리상황, 사업이행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제출케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용자금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현지 지도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 (결산 및 보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기금운용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년도 3월 15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기금의 조성 용자 업무 위탁 등 기금운영 관리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경상북도울릉군민여객선운임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철 우

2005. 3. 25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울릉군민여객선운임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울릉군민여객선운임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북도울릉군민여객선운임지원조례”를 “경상북도울릉군민
여객선운임지원조례”로 한다.

제2조중 “3개월이상 울릉군”을 “울릉군”으로 한다.

제5조제1항중 “매분기”를 “매월”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사업자는 매분기”를 “사업자는”로, “다음분기 첫 달의 20일 까지 도지사에게 재정지원금을 청구하여야 하며”를 “매월 말을 기준으로 재정지원금을 청구하고”로 하고, 동조 제4항중 “다음분기”를 “차기”로, “청구하였을 시는”를 “청구하였을 때는”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운임지원 대상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 대상은 승선일을 기준으로 하여 <u>3개월 이상 울릉군에 주민등록</u> 을 둔 자로 한다.	제2조(운임지원 대상주민) <u>울릉군</u>
제5조(재정지원금의 집행 및 지원절차) ① 재정지원금은 <u>매분기</u> 정산금으로 지급한다. ② 사업자는 매분기 승선자 명단(일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번호 등) 및 도지사가 요구하는 자료를 작성하여 <u>다음분기 첫달</u> <u>의 20일 까지</u> 도지사에게 재정지원 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사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이 있거나 부득이한 경우 또는 도지사 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지급 후정산할 수 있다. ④ 지급된 재정지원금이 부정한 방법 으로 청구되거나 착오 지급되었을 경우에는 <u>다음분기</u> 지급일에 정산 지급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u>청구</u> <u>하였을 시는</u>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제5조(재정지원금의 집행 및 지원절차) ① <u>매월</u> ② 사업자는..... <u>매월말을 기준으로</u> <u>재정지원금을 청구하고</u> ,..... ④ <u>차기</u> <u>청구</u> <u>하였을 때는</u>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사무국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철 우

2005. 3. 25

경상북도조례 제 호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사무국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The 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의 상설사무기구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및 명칭) 사무국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비영리단체로 하며, 그 명칭은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위치) 사무국의 주된 사무소는 비영리단체로 등록하는 소재지로 한다.

제4조(사업)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예산편성 및 집행
2. 사업계획서, 연례보고서, 회계보고서의 작성
3. 총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지원
4. 총회 및 실무위원회 의결사항의 수행지원
5. 분과위원회 활동지원
6. 연합의 장기계획안 작성, 조정
7. 연합발전을 위한 공동프로젝트 개발 및 추진

8. 연합홈페이지 운영
9. 회원단체간 업무연락 및 조정
10. 연합관련자료 정리, 정보분석 제공
11. 지역연구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12. 연합 정보지 발간 등 대외홍보
13. 기타 총회의 의결로써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임원의 자격요건) 사무국의 사무총장은 동북아연합발전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국제관계전문가로 한다.

제6조(재정지원) 경상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사무국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7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도지사는 사무국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에 공유재산을 대부·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사업계획 및 결산) ①사무국은 다음연도 3월 전까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사무국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와 사업실적을 다음연도 6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보고 등) ①도지사는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사무국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공무원 파견 등) ①도지사는 사무국 사무총장의 요청에 의하여 사무국의 업무지원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 의 안 : 1건】

- 2005년도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운용변경계획안
- 대한민국 경상북도와 일본국 시마네현간 자매결연
철회의 건

대한민국 경상북도와 일본국 시마네현간 자매결연 철회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5. 3.

제 출 자 : 경상북도지사

1. 제안이유

- 독도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1 ~ 37번지에 소재한 경상북도의 관할구역으로서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자매단체인 일본의 시마네현에서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을 강행하였음.
- 양 도-현은 지난 1989년 10월 6일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15여년 동안 교류협력활동을 통해 양국의 우호증진과 친선교류에 증진하여왔으나 이번 시마네현의 조례제정은 양 도·현간의 우호관계를 근본적으로 무시한 처사일뿐 아니라, 우리 영토에 대한 침략적 행위로 볼 수 밖에 없는 처사임
- 그간 수차례의 항의와 성명서를 통하여 조례안의 폐기를 촉구하였으나 시마네현측에서 기어이 조례를 의결함에 따라 더 이상 경상북도와 교류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
- 「대한민국 경상북도와 일본국 시마네현과의 자매결연 철회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골자

- 건 명 : 대한민국 경상북도와 일본국 시마네현간 자매결연철회
- 자매결연철회 주요내용
 - 경상북도는 시마네현이 더 이상 우호·신뢰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자매결연을 철회코자 함.
- 철회방법 : 도의회 의결을 거쳐 철회공문을 시마네현에 통보

3. 참고자료 : 성명서(일본 시마네현의회의 소위 “다케시마의 날”조례의결 관련)

성명서

-일본 시마네현의회 “다케시마의 날” 조례 의결 관련-

대한민국 경상북도는 일본 시마네현과 오랜 교류의 역사적 근거와 지리적 인접성을 이유로 지난 1989년 10월 6일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15여년 동안의 교류협력 활동을 통해 양국의 우호증진과 친선교류에 크게 기여해 왔다.

그러나 오늘 시마네현의회에서 그간의 신뢰와 우정을 저버리고 그토록 우려했던 소위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을 강행함으로써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우리의 영토가 명백한 독도(獨島, Dokdo)에 대한 침략행위를 하였다.

우리는 시마네현의 이와 같은 행태를 온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하면서 독도를 관할하는 경상북도지사로서 국내외에 천명한다.

독도는 행정구역상으로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1-37번지로서 역사적으로 서기 512년 우산국(于山國)이라는 지명으로부터 현재 독도로 불려지기까지 1500여년 한결같이 우리의 조상들이 관리해 온 고유의 영토임이 분명하다.

아울러 수천년 동안 경상북도민들이 어업행위를 해 온 소중한 생활터전이며, 생태적으로 보전할 가치가 있는 다양한 생물자원이 있어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는 경상북도의 아름다운 섬이다.

오늘 이같이 소중한 경상북도의 보물이자 재산을 찬탈하려는 시마네현의 도발적 행위는 지방정부간의 외교관계에서도 전례가 없는 만행이며, 주권국가에 대한 도전행위로 규탄 받아 마땅하다.

특히 양국가는 금년을 “한일 우정의 해”로 정하고 각종 친선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침략행위를 하는 것은 입 속에는 꿀을 담고 뱃속에는 칼을 숨기고 있는 구밀복검(口蜜腹劍)의 배신행위로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또한 시마네현의 일련의 행동들에 대해 수차례에 걸친 항의와 성명을 통해 충분히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같은 망동을 범한 점은 더 이상 우호·신뢰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자매결연 관계를 철회하고 시마네현과의 단교를 선언한다.

앞으로 우리는 경상북도 동해의 아름다운 섬, 독도를 가꾸고 지키기 위해 국민들과 함께 뜻을 모아 다양한 정책들을 펼쳐 나갈 것이다.

2005년 3월 16일

경 상 북 도 지 사 이 의 근

【 건 의 안 : 1건 】

○ 신한일어업협정 재협상 촉구 건의문

신한일어업협정 재협상 촉구 건의문

의안	
번호	

제안년월일 : 2005. 3. 25

제안자 : 교육환경위원장

1. 제안이유

-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상으로 명백한 우리 영토임에도 지난 3월 16일 일본국 시마네현에서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는데 대하여
- 이는 지난 1999년 체결된 신한일어업협정에서 독도를 중간 수역으로 규정한 것이 빗나가 되고 있으므로
- 독도에 대한 영유권과 우리 어업인들의 조업권을 최대한 보호하는 한일간 어업협정을 새로이 체결할 것을 촉구하는 경상북도 의회의 통일된 뜻을 건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가 중간수역이 아닌 우리의 배타적경제 수역안에 포함되도록 하고
- 우리 어업인들의 조업활동에 이익이 되도록 한일간 어업협정을 새로이 체결할 것을 촉구 건의함

3. 건의내용 : 별첨

신한일어업협정 재협상 촉구 건의문

지난 3월 16일 일본국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은 우리 국민을 다시 한 번 격분케 하고 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금번 일본국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은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도발행위임이 분명하다.

이에 우리 경상북도의회는 일본 측이 몇 가지 합당치 않은 사료에 연유하여 터무니없는 행위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우리정부가 1999년 체결한 신한일어업협정과도 무관치 않다고 보고 300만 도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재협상 할 것을 건의한다.

1. 신한일어업협정은 독도를 중간수역에 위치하게 함으로써 일본의 독도 영유권 망상에 빌미를 제공하였으므로, 경상북도의회는 한일간 재협상을 통하여 독도를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 포함하는 새로운 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할 것을 촉구한다.
1. 새로운 한일어업협정에서는 우리 어업인들의 생활터전인 주요 어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아울러 지역어업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합리적이고도 국익에 도움이 되는 협상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05년 3월 25일

경상북도의회 의원일동

의정활동보고서(제197회 임시회)

2005. 4 인쇄 / 2005. 4 발행

발행 / 경상북도의회

편집 / 의사담당관실

전화 : 602-5139

FAX : 955-9185

〈비매품〉